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범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 5년

제7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비치)

①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분류처우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교도소등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교도소등은 보안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 유예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도소장등은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받는 교도소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처우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등은 수형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당해 수형자의 분류처우심사표를 신분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장 수형자의 분류

제1절 분류심사

제8조 (분류심사의 구분 등)

①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유예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형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분류심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분류 및 누진처우에 관한 사항
2. 작업부과·훈련방법 및 교육계획 등 처우지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후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신입심사)

①신입심사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성장과정·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야 한다.

②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 하되, 다음달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분류심사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신입심사대상자는 독거실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사)

①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 접 수일부터 6월이내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부정기 재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교정사과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규율을 위반하여 징발하기로 결정한 때
4. 가석방 또는 귀휴심사상 필요한 때
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
6.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절 분류조사

제11조 (분류조사)

①교도소장등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신상에 관한 개별사 안에 대하여 분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도소장등은 분류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수형자 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경찰서 기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교도소장등은 효과적인 분류조사를 위하여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 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고충상담·심 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분류조사 사항) 분류조사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 보호관계
6.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분류검사)

①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에 대하여 인성검사·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 2. 기타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자

③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년 6월 이상이고, 연령이 35세 미만인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교도소장등은 분류검사 결과를 분류처우심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분류급

제14조 (분류급의 구분 등)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용급 :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 2. 개선급 :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에 따라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책임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분류급
- 3. 관리급 :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 4. 처우급 :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

제15조 (수용급의 유형) 수용급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W급 : 여자수형자
- 2. F급 : 외국인수형자
- 3. I급 : 금고수형자
- 4. J급 : 20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 5. Y급 : 23세 미만의 성년수형자
- 6. L급 :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 7. M급 : 정신장애자
- 8. P급 : 신체상의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자
- 9. Co급 : 제39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6조 (개선급의 유형)

①개선급은 별표의 분류지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A급 :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 2. B급 :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가능한 자
- 3. C급 : 범죄성향이 진전된 자로서 개선이 곤란한 자

②분류지표는 분류처우심사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급의 유형) 관리급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g1급 : 완화계호급으로 구외작업에 적합한 자
- 2. g2급 : 중간계호급으로 구내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 3. g3급 : 엄중계호급으로 구외작업 및 구내관용작업에 부적합한 자
- 4. g4급 : 특별계호급으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제18조 (처우급의 유형) 처우급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V급 :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
- 2. E급 : 학과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 3. G급 : 생활지도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 4. R급 : 작업중립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 5. N급 :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 6. Q급 : 양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7. T급 :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8. H급 :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 9. O급 : 개방처우에 적합한 자
- 10. S급 : 특수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제4절 분류수용

제19조 (시설별 분류수용 등) 수형자는 수용급·개선급·관리급 및 처우급 등 각 분류급별로 업종경비시설·중간경비시설·완화경비시설 또는 개방시설에 분류수용하고, 시설별로 단계처우를 실시한다.

제20조 (급별 분류수용과 처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급별·범수·죄명·연령·형기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지정·작업지정·교육생선발 또는 훈련생선발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누진계급

제1절 통칙

제21조 (누진계급의 구분 등)

①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누진계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급
- 2. 제2급
- 3. 제3급
- 4. 제4급

③교도소장등은 누진계급을 수형자의 번호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도소장등이 정한다.

제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신입수형자는 제4급에 편입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단계별로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킨다.

제2절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

제23조 (책임점수) ①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1의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집행 할 형기를 월로 환산함에 있어서 월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1. 초범자인 경우 :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2. 2범이상인 자의 경우 : A급 2.5점, B급 3.5점, C급 4.5점

②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한다.

③수형자에 대하여 2 이상의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병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④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⑤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소멸하여 제4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책임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3급 또는 제2급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소득점수) ①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소행점수 : 최고 6점
2. 작업점수 : 최고 6점
3. 상훈점수 : 최고 3점

②소행점수는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③작업점수는 근면성 및 작업성적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④상훈점수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를 산정하고 당해 계급에 한하여 매월 소득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감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매월의 소득점수는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이를 기재한다.

제25조 (소득점수의 채점기준) ①소행점수와 작업점수는 수·우·미·양·가로 구별 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작업장 전체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운영 또는 처우의 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는 20퍼센트, 우는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상훈점수는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3점, 사고수습 또는 진압에 공로가 있

는 수형자는 2점, 기타 공로가 있는 수형자는 1점으로 채점한다.

제26조 (휴양자의 작업점수) 누진계급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휴양중인 경우 그 기간중에는 작업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중에 부상을 당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휴양기간중인 경우에도 작업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 (행형성적의 채점 및 고지) ①보안 및 작업담당교도관과 관구책임교도관은 수형자의 평소의 소행과 작업성적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당해 수형자의 행형성적을 채점하여 다음달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이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상훈점수의 부여, 분류급의 변경 또는 특별진급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분류심사과장은 행형성적채점 및 고지서를 분류처우회의의 심의·의결 후 매월 20일까지 해당 관구책임교도관에게 배부하고, 관구책임교도관은 보안 또는 작업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형자에게 소득점수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시의 행형성적심사) ①수형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다른 교도소등으로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받는 교도소등에서 당해 수형자에 대한 그 달의 행형성적을 심사한다. 이 경우 이송을 한 교도소등은 이송전일까지의 당해 수형자에 대한 소행점수·작업점수 및 상훈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이송받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형자를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한 교도소등에서 당해 수형자에 대한 그 달의 행형성적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송받는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진급

제29조 (진급) ①계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이 경우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개선급의 변경에 의하여 진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1일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③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특별진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가석방 또는 귀류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수형자로서 책임점수의 전부를 공제하지 못한 원인이 수형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
4.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거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고시에 합격한 때

5.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1조 (진급자의 처우) 진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진급된 계급의 처우를 한다. 편입 또는 강급된 자가 복귀한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절 진급정지

제32조 (진급정지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형자의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형의 확정(確定)이 예정되는 때
3. 기타 진급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정지기간동안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이 정지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진급정지기간) ①수형자에 대한 진급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열람 제한처분을 받은 자 : 1월
2. 신청작업의 정지 및 작업상여금의 삭감처분을 받은 자 : 2월 이내
3. 금지처분을 받은 자 : 3월 이내
4.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형 확정(確定)이 예정되는 자 : 6월 이내
5. 기타 진급시킬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이내

②제1항의 진급정지기간은 동일계급에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진급정지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절 강급

제35조 (강급) ①제3급 이상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계급을 강급시킬 수 있다.

1.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 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소행점수가 현저히 불량하여 당해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강급된 자의 복귀) ①강급된 자가 특히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계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당해 계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한다.

제37조 (강급처분의 유예)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동안의 소득점수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강급처분 유예의 효력) 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6절 급의

제39조 (급의) 급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2. 입산부
3. 장애인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4. 70세 이상인 자
5.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 하고도 누우치는 빛이 없는 자
7. 제4급의 자중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40조 (급의의 등급 및 처우기준) 급의의 등급은 가급·나급·다급 및 라급으로 구분하며, 그 등급별 처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 : 제2급과 동일한 처우
2. 나급 : 제3급과 동일한 처우
3. 다급 : 제4급과 동일한 처우
4. 라급 : 접견에 한하여 제4급과 동일한 처우

제41조 (등급편입) ①신입수형자가 제3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급에 편입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 경과한 때에는 나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39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입수형자로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급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다급 또는 나급에 편입한다. ③제39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라급에 편입한다.

④누진계급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제3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급외로 편입되는 경우의 그 등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급 : 가급
2. 제3급 : 나급
3. 제4급 : 다급

제42조 (등급변경심사) ①등급변경심사는 정기 등급변경심사와 부정기등급변경심사로 구분한다.

②정기 등급변경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기가 2분의 1에 도달한 때
2.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기가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도달한 때

③부정기 등급변경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가석방 또는 귀류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3.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과 처우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월이내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 등급변경심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등급변경심사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 (등급변경시의 심사사항) 등급변경심사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선여부
2. 규율준수여부

3. 협동심 및 책임감

4. 근면성 및 작업성적

5. 작업가능여부

제44조 (등급의 감급·복귀 및 유예) ①징벌처분을 받은 급외등급 가급·나급 또는 다급의 자로서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감급시킬 수 있다.

②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등급이 감급된 자의 복귀 및 유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급외의 누진계급 편입) ①제39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담해 사유가 소멸되어 누진계급으로 편입되는 경우의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 : 제2급
2. 나급 : 제3급
3. 다급 : 제4급

②제39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담해 계급의 소득점수에 합산한다.

제4장 누진처우

제1절 자치활동

제46조 (대표자의 선정) ①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 및 희망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급 수형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제1급 수형자의 호선에 의하여 교도소장등이 지명 한다.

제47조 (자치활동) ①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자치활동의 범위는 인원점검·취미활동 및 거실안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주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자치활동을 허가받은 수형자가 신체·의류·거실 등에 대한 검사·청소 및 정리 정돈 등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도소장등은 동일 거실안의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활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접견·서신 및 전화사용

제48조 (접견 및 서신의 허용횟수) ①수형자별 접견허용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급 수형자 : 매월 4회
2. 제3급 수형자 : 매월 5회
3. 제2급 수형자 : 매월 6회
4. 제1급 수형자 : 수시

②수형자의 서신발송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접견장소) ①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가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급 및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 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50조 (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의 접견에 있어서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 (전화사용) 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5회,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월 3회의 범위안에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장등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3절 물품급여

제52조 (물품급여의 원칙) 수형자에 대한 물품급여는 누진계급에 상응하도록 한다.

다만, 식량·음료 기타 건강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품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

제53조 (거실장식) 수형자의 거실에는 책상·서화·화분·거울·시계·달력 및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

제54조 (차입물품의 사용)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차입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 (공동물품의 대여)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생활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절 교육 및 교회

제56조 (라디오 청취)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텔레비전 시청)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 (시계착용) 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시계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신문열람) ①교도소장등은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형자에게 매일 신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열람은 교도소장등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시간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③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등이 정한다.

제61조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①교도소장등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약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진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자의 사진 소지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급 이상으로 독거수용되거나 동급 이상의 수형자와 혼거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진비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자의 사진비치도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 (자기사진 송부) ①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기타 근친자 등에게 수형자 자신의 사진을 송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진촬영과 송부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63조 (사진촬영 요령) ①사진은 교도관이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수형자가 자신의 경비로 구입한 의류(이하 "자비부담의류"라 한다)를 입게 하고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거실 기타 교도소등의 설비가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 (사회견학) ①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견학을 하는 수행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5조 (사회봉사활동) ①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행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최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행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수행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6조 (외부의 종교행사 참석) 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행자에 대하여 최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해 수행자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에서 실시하는 교도소등의 밖에서의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수행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67조 (영화 등 관람) ①교도소장등은 제1급 수행자에 대하여 최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등의 밖에서의 영화 등의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영화 등을 관람하는 때에는 자비부담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5절 작업

제68조 (작업지정) 교도소장등은 수행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 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전업) 제4급 수행자에 대하여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우 또는 작업형편에 의하여 전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작업상여금 사용) ①교도소장등은 수행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중 다음 각호의 범위안의 작업상여금에 대하여는 수행자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제1급 수행자 : 작업상여금의 2분의 1 이내

2. 제2급 수행자 : 작업상여금의 3분의 1 이내

P> 3. 제3급 수행자 : 작업상여금의 4분의 1 이내 ②작업상여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업상여금사용 신청서를 교도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작업지도의 보조) 제2급 이상의 수행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개인작업) ①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행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외의 시간에 수행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73조 (개인작업용구 사용) ①교도소장등은 개인작업이 허용된 자에 대하여는 개인 작업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작업용구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특정한 용기를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인작업에 필요한 재료구입경비는 수행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74조 (교도관의 업무보조) 교도소장등은 제2급 이상의 수행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행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가석방

제75조 (가석방심사사할 조사) ①교도소장등은 가석방예비회의 개최전일까지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예비회의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처우회의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6조 (가석방심사신청 등) ①교도소장등은 가석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석방예비심사대상자명부에 등재하고 가석방예비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심사에 있어서 무기 수행자는 20년을 그 형기로 본다.

③가석방예비회의에서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의결기구

제1절 분류처우예비회의

제77조 (분류처우예비회의) ①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할 수행자의 분류 및 누진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등에 분류처우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예비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 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78조 (예비회의의 기능) 예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행자의 분류심사 및 급별사정 등에 관한 사항
2. 수행자의 소행·작업 및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수행자의 계급의 편입·진급·진급정지 및 감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급외자의 등급에 관한 사항

제79조 (예비회의의 구성) ①예비회의는 작업담당·보안담당·분류심사담당·누진처우담당 및 관구 책임교도관 등 관계교도관중에서 분류심사과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②예비회의의 의장은 분류심사과장이 된다.

제80조 (심의사정 및 서류회부) ①분류심사과장은 제7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에서 해당사항을 심의·사정한 후 관계자료를 정리하여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의결) 예비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 (예비회의 결과보고) 분류심사과장은 예비회의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분류처우(예비)회의심사의결내역서에 기재하여 교도소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분류처우회의

제83조 (분류처우회의) ①예비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및 기타 수행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과 행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신청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도소등에 분류처우회의(이하 "처우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처우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당해 교도소장등이 수행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제84조 (분류처우회의의 구성) ①처우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처우회의의 의장은 당해 교도소장등이 된다.

②처우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 및 각 과장과 교도소장등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제85조 (의결) 처우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 (회의록 작성) ①교도소장은 처우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분류처우심사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등은 처우회의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예비)회의심사의결내역서에 당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진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진급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진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1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전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체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b)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c)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 [逸脫] 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 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6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

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특사 또는 감형을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a)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a)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3항 (b)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ii)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iii)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iv)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2. (a)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위에 알맞는 별도 대우를 받는다.
(b)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11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금당하지 않는다.

제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위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13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공개라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이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a)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 (b)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c)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d)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시리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이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 (e)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 (g)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갱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려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 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제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 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24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25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 (b)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 (c)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제26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는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위원회 의원의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동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안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되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 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 번째 선거가 있는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그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제35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38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39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 (b)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40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행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a)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있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41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한 가맹국이 불 때에 자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임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b)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c)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d)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e) (c)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f)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g)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i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42조

1.

(a)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게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서 보고를 제출한다.

(a)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b)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c) (b)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한다.

(d) (c)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 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편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44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45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47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부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여러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52조

제48조 5항의 구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48조의 구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의 구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51조의 구정에 따라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53조

1. 이 협약을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약칭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규정의 시행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부의 구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가, 이 의정서의 구정에 따라, 이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하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이 의정서에 가맹하는 협약 가맹국은,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국민의 통보를 접수·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통보가 의정서에 가맹하지 아니한 협약 가맹국에 관계가 되는 것일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에 열거된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어야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 것·통보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협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제4조

1.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정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주의 환기를 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사안을 밝히는, 그리고 구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동안에 취한 구제조치를 밝히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계 가맹국이 보내온 모든 서면 정보에 비추어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으로부터 온 통보를 검토하지 않는다.
 - (a)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지 않을 것.
 - (b)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6조

위원회는 협약 제 45조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에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시킨다.

제7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채택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9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의정서는 1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또는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의정서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 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도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12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탈퇴 선언은 그 통보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13조

이 의정서의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 (c)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선언.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19. 72년, 78년 교정예규집
中 좌익수형자 관련 부분

로 각 소장은 아래사항에 따라 호송업무수행에 유감 없을것은 물론 호송 교도관의 판기 확립에 각별 노력할 것.

가. 호송교도관은 출장 순번에 의하거나 사사 또는 타용무를 겸할것이 아니라 평소의 근무성적과 간부 감독자가 없더라도 교도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말은바 직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엄선하여 명령할 것.

나. 호송교도관은 반드시 단정한 제복을 착용케하고 사복착용은 미결수용자의 현장점중등 법원 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특히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것.

다. 호송교도관은 수용자 도주등 사고방지는 물론 무기의 피탈 도난또는 분실을 방지토록 호송출장 사전에 각성을 촉구할 것.

라. 호송교도관은 사고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태만히 하거나 임의로 사복을 착용 또는 무기를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가 있을때는 즉시 의법파면 조치할 것.

마. 수용자를 이송받는 측의 소장은 호송교도관이 사복을 착용하였을때는 호송교도관 소속 소장에게 통보하고 당부에도 그 사실을 보고할 것.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 (31-41)

법 무 부

교 정 130

69. 12. 19.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기관장 출장등 사전 승인

행형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안과 구금의 유지에 있음은 물론 현하 정세의 부합관계에서 시설 및 재소자에 대한 경비강화가 미한층 요청되는바 기관장이 출장등으로 임지를 떠 남으로서 통수계통이 흐터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소장은 아래에 의거 임지를 떠나지 말고 직원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보안구금상의 자체경비에 만유감

없도록 할 것.

1. 필요 불가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시간내의 외출을 금할 것.
2. 소장은 공사를 막론하고 직장을 떠나 출장 또는 여행을 함에는서면 또는 전화로서 사전 교정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 1-26, 29

법 무 부

교 정 180-967

(22. 4075)

1970. 1. 29.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교정사고 방지책 시달

1. 근간에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행자 난동과 난동수행자의 총살 및 사살사고가 있었음에 따라 앞으로 이와같은 사고를 예방코저 아래와 같이 시정대책을 지시하니 각별 유의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가. 사고 시정 대책

(1) 무기 및 보안과 사무실 관리의 철저

- (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무기는 현재와 같이 견고한 무기고에 보관하되 총기와 탄약을 분리 보관토록 할 것.
- (나) 비상용으로 보안과 사무실에 비치한 총기는 2정을 당직교감과 배치교도가 사용하는 책상후면 벽측에 세워두고 탄약은 각 5발씩 탄창에 넣어 당직교감 및 배치교도가 직접 휴대하고 이석시에는 불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하고 또한 불시에 사고가 돌발하여 보안과 사무실을 떠날때에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것.
- (다) 보안과 사무실내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입소자, 출소자, 취조자, 청소부, 지도원, 독보등 모든 재소자의 출입을 일체 엄

금할 것. (청소는 고용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것)

(라) 보안과에 최선의 방법에 의한 사고진압에 사용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효과적이고 무기에 가름할 수 있는 경찰봉과 같은 방망이와 목봉(길이 150센치미터, 직경(위)5센치미터, 하(손잡는쪽) 4센치미터) 및 검도복을 비치할 것.

(2) 흉기등 위해물의 단속 철저

(가) 재소자 취식용 숟가락은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급여하되 불구환자등 필요한 자에게 우선 급여하고 그 품질은 프라스틱 제품으로 하고 철제 숟가락은 즉시 회수할 것.

(나) 이발기구는 재소자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그 간수를 철저히 하고 불평을 갖인자 포악한자등 요시찰 재소자의 이발계호를 철저히 할 것.

(다) 매일 1회이상 재소자의 거실을 검사하고 공장 또는 실외에서 환실하는 재소자의 신체와 의류를 철저히 검사할 것.

(라) 소내의 관망을 방해하거나 계호상장해가 되는 물건(목사다리)을 제거할 것은 물론 인명에 위해를 가할 물건(작업기구, 목봉, 돌, 인화물질등)의 방치를 철저히 단속할 것.

(3) 재소자 동정사찰의 철저

(가) 불평불만을 가진자와 포악수의 동태를 세밀히 사찰하여 불평불만자에 대하여는 면접 상담등으로 그 고정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포악수에 대하여는 독거 감방에 수용하여 엄중 감시할 것.

(나) 일반수중 불순분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시키지 않고 독거수용한후 엄중 감시할 것.

(다) 미전향 좌익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후 그의 일거 일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전향좌익수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으로는 요시찰에 붙여 위장전향여부와 타재소자에 대한 사상전파등 불순행동의 예방을 위한 동정사찰을 철저히 할 것.

수 10 18 19 20 21

(4) 소장 및 과장 면접의 원만한 실시

소장 또는 과장은 면담을 원하는 재소자를 가능한한 수시로 면접할 것은 물론 부하직원이 소장 또는 과장 면접 신청을 중간에서 묵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총집교회시에 면접신청을 묵살하는 일이 있을때는 소장 순시시에 직접 신청하도록 고지하는 한편 매일 1회이상 구내를 순시할 것.

(5) 방망이 휴대와 훈련의 철저

(가) 앞으로 구내순찰 근무자에게는 경찰방망이를 휴대토록 할 것이며 그 방망이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것.

(나) 목봉 및 각종무기의 조종과 사용법을 사무처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숙지케하여 사고시에 침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 (31-41)

.....

법 무 부

교 정 139-1329

(22, 4075)

1970. 2. 9.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수시 확인 검열 자체 실시

1. 70년 당부 시정방침에 의한 자체기강확립을 위하여 아래에 따라 수시 확인 검열을 별첨에 의거 자체 실시할 것.

가. 교정 130-15295(68. 10. 2)에 의하여 실시하면 자체불시 확인감사는 본 검열실시와 동시 이를 지양할 것.

나. 본 검열시에는 위 불시확인 감사에 있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경향

법 무 부

교 정 835, -363

1963. 6. 25.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수형자 석방 통보

각 교도소에서 법규 또는 통칙에 의하여 종래 실시하고 있는 수형자의 각종 석방통보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시행키로 하였으니 금후 일체의 석방통보는 본 통칙에 의거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대공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석방자 감호에 가일층 노력할 것.

1. 일반수형자 석방통보

가. 가석방

각 교도소장은 가석방 단속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석방즉시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 언도를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장 및 감호를 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1호 양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나.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장과 귀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2호 양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2.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 대상자 석방통보

가. 좌익수형자(전향자포함)와 기타 시찰을 요하는 수형자가 형기종료, 가석방, 특사,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할 경우에 형기종료시에는 출소 4개월전에 기타자는 석방즉시로 검찰총장, 내무부 치안국장, 귀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별지 3호 양식에 의거하여 통보한다.

나.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는 자가 좌익수형자(전향자포함)

인 경우에는 가석방은 좌익수형자 통보로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정지 통보로 각각 가름한다.

다. 내무부 치안국장과 귀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좌익수형자 (전향자 포함)는 반드시 명함판 사진(2센치미터×3센치미터)을 첨부 할것. (기타 기관은 제외)

3. 본 통보 해당자의 본적, 주소가 복한이거나 귀주지가 없어 갱생보호회에 보호 의뢰할 경우에는 그 갱생보호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기관에 통보한다.

4. 법무교 2340(62. 11. 20.)로서 시달한바와 같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문 및 신원조회를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경찰서장으로부터 주소 부재 허위사실등으로 조사 불능이라고 회보될 경우에는 다시 본인에게 문의 재조회를 하여 확인 정비할 것이며 여하한 경우라도 인적사항이나 귀주지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가석방자의 감호와 사찰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

5. 최근 각 교도소에서 출소한자 중 귀가치않고 가두에서 방황 또는 자취를 감추고 있어 사찰대상자 선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니 각관은 석방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귀가할 것을 적극 권장할 것.

6. 본 통첩에 의하여 법령제2942(89. 11. 1.)만기석방자에 대한 사전통보에 관한것과 교도 양식-39 형집행정지 통보양식은 폐지되었으니 사무상 착오 없도록 할 것. 끝.

유첨: 1. 가석방통보 1부.

2. 형집행정지 석방 통보 1부.

3.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통보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1. 19. 23. 24. 25. 26)

○○ 교도소

19

시 무 835, 8-

수 신

제 목 가석방 통보

당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자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통보합니다.

본적

주소

귀주지

성명

죄명

형기산일

가석방허가년월일

감호경찰서

보호자

생년월일

형명형기(통산)

형기종료일

출소년월일

연도법원

○○교도소장 교정관 ○ ○ ○

○○ 교도소

19.

명교서 835, 8-

수 신

제 목 형집행정지 석방 통보

당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본적

주소
귀주지
성명
죄명
집행정지관청
형기산일
집행정기간
집행정지사유

생년월일
형명형기(통산)
집행정지일
형기종료일
잔형기간

○○교도소장 교정관 ○ ○ ○

○○ 교도소

시 무

19

수 신

제 목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 통보

당소에서 출소한 좌익수형자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통보합니다.

본적

주소

귀주지

성명

형기산일

석방종류

재소중행장

보호자의 주소 및 성명

주요가족명

범죄개요

남 여

생년월일

사진

형명형기(통산)

형기종료일

출소년월일

전향여부

참고사항

○○교도소장 교정관 ○ ○ ○

법 무 부

1968. 7. 26.

교 정 2061, 2-11589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형자 석방 통보

법교정 835, 8-363 (63. 6. 25) "수형자 석방통보"에 의거 좌익수형자 는 석방 2개월전에 각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내무부장관으 로부터 석방된 미전향 좌익수의 행방불명방지와 소재파악상 석방 4개월전 에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석방 4개월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하니 동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1. 22. 31-41)

법 무 부

1968. 8. 2.

교 정 2061, 2-1188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형자 석방 통보

법교정 2060-30437 (66. 12. 21) "정보사업 보도 및 교도에 관한 협 조"와 교정 2060-6723(68. 4. 6) "좌익수 업무조정"및 교정 2061, 2-

11589(68. 7. 26) "좌익수행자 석방 통보는 별지 사본과 같이 중앙정보부 장으로부터도 석방된 미전향 좌익수의 행방불명 방지와 소재 파악상 석방 2개월 전에 실시하던 통보를 4개월전에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하달하니 앞으로는 반드시 석방 4전개월전에 통보하여 동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좌익수 출소자석방통보 사본 1부. 끝.

법 무 부 장 과

병 - (1. 22. 31. 41)

법 무 부

교 정 2061-4524

1969. 4. 23.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행자 석방 및 보호

1. 정보 2061, 3-5331 (69. 4. 4.) 내무부 치안국장으로 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좌익수행자(전향자 포함)석방에 있어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귀주지가 없는자는 석방후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있어 좌익수 동태 파악에 지장이 막심하다 하니 앞으로 좌익수행자의 석방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석방 또는 보호 조치토록 할 것.

가. 일정한 귀주지가 없는 좌익수행자에 대하여는 석방통보서를 교도소 소재지 경찰서에 사전통보하고

나. 당해 교도소장은 소재지 갱생보호회 지부장 또는 지소장과 사전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수용보호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극 권유하여 직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주거를 가질 때까지 수용보호 노력할 것이며.

2. 현행 좌익수 석방절차에 있어 석방 4개월전에 석방통고를 하고 있는 귀주 예정지를 재소자 임의 진술에 의거 통보하고 있음으로 연고자가 지나 타 관내로 이주하여 없는 경우에 출소후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석방절차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니 만전을 기할 것.

3. 좌익수행자는 석방 4개월전에 귀주예정지를 조사하여 관할경찰서에 회하여 사실회보를 접수후 해당관서에 석방 2개월전에 석방통고를 하며 석방시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경찰관서에(경찰관서에서 선정 연고자)인제하고 무연고자는 관할 갱생보호소장에게 인제할 것.

4. 귀주 예정지의 조회시는 접견, 서신등에 의한 제반 증거자료를 수취하여 귀주지 조회에 적용을 기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1. 24. 31-41)

법 무 부

법 형 제136호

1961. 8.

수 신 각 교도소장, 지소장

제 목 좌익수 조사(월례)보고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어 좌익수 사상 전향자 및 미전향자를 하기 요령에 의거 하여 1961년 8월 1일 현재로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당부에 필착 보고 하십시오.

"기"

1. 본건 좌익수라 함은 죄명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좌익수로서 것이며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한하여는 동법 제6조

다. 갱생보호회 지부장 또는 지소장은 법교관 829, 63-7348 (63. 6. 26.)에 의거 지시한 좌익수 출소자 사전통보지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 라. 좌익수행자 석방통보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수신관서명을 정확히 기록하여 문서 수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동향기록란에는 가. 재소증 서신왕래자 귀주지 및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나. 면회자에 대한 거주지 및 인적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등을 기록하고 다. 중요동향 및 언동을 수록할 것. 3. 교도소간의 이송시에는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를 신분장과 공히 송부 계속 활용할 것.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1. 22. 31-41)

갱생보호회 본부, 갱생보호회 서울지부 및 인천지소, 수원지소, 갱생보호회 춘천지부, 갱생보호회 청주지부, 갱생보호회 대전지부 및 공주지소, 갱생보호회 대구지부, 안동지소, 김천지소, 갱생보호회 부산지부, 진주지소, 마산지소, 갱생보호회 전주지부, 군산지소, 갱생보호회 광주지부, 목포지소.

법 무 부

1970. 2. 28.

교 정 2061-2086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 석방 절차 조정

1. 중대대 704-601 (70. 2. 20.)에 의한 다음 사항을 이첩하달하니 동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공문법 위반자는 전원을 본 조사에 적용 시킬 것.

본 좌익수 조사 보고는 매월 15일 현재 개방인원을 기준하여 월 1회 작성 제출하되 당부에는 매월 18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이며 특히 기일을 준수할 것.

본 보고는 미봉양면패지를 사용하되 한문으로 작성할 것이며 난필 오기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가) 별첨 양식 1호는 전향자와 미전향자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각 1통씩을 동 2, 3, 4호는 각 2통씩을 작성 제출할 것.

(나) 다음 보고 부터는 양식 2, 3, 4호에 한하여 입소 출소 및 신분 이동등에 의한 변동자만을 작성 제출할 것.

(다) 양식 2, 3, 4호의 1연번호란에는 수용교도소명과 동 교도소의 일련번호(칭호 번호가 많임)를 새로 정하여 기재할 것이며(예 서울1 서울2...대구1 대구2...), 출신도란에는 본적지 도명을 기재할 것.

법 형: 제136호

1961. 8. 25.

(라) 양식 3호 미전향 재감자 명단에는 사형수를 포함하고 동 4호 미결수 명단에는 피고인 피의자 및 군 가석방자를 포함할 것.

(마) 죄과는 가장 중한 죄명으로 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양식 1

좌익 기결수 통계 (전향자, 미전향자별)

1961년 월 일 현재

출 신 도 별

도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평북	평남	합북	합남	합계
인원수															

61년 8월 8일
중앙정보부
좌익수
신태3A

연령 및 성별

년령별 성별	20세 이하	25세 이하	30세 이하	35세 이하	40세 이하	45세 이하	50세 이하	50세 이상	60세 이상	계
남										
여										

형기 별

형기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15년 이상	무기사형	계
인원수									

죄 과 별

죄 과 별 인원수	간첩	외환내란	특별 치령위반	조법 위반	국가보안 위반	반공법 위반	특수범죄 치벌에관 한특조령	국경법 제32조	국경법 제33조	기타	계

양식 2

전향재감자명단 (기결)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출신도	성명	생년월일 년 령	성별	죄과 형량	확정년월일 석방년월일	연도법원	수교 도소	감도소

양식 3

미전향재감자명단 (기결)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출신도	성명	생년월일 년 령	성별	죄과 형량	확정년월일 석방년월일	연도법원	수교 도소	감도소

양식 4

미결수명단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출신도	성명	생년월일 년 령	성별	죄과	구속법원 구속년월일	수교 도소	감도소	1, 2 심 연도내용

법 무 부

1961. 12. 2.

법 형 제8027호

수신 각 교도소장, 지소장

제목 죄익수 조사(월례보고)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지난 8월 24일 자 범비 제136호 예규통첩에 의하여 죄익기결수의 월례 통계 보고중 다음 통계표를 오는 12월 15일 현재분부터 추가 보고하십시오.

다 음

가. 연도법원별 (기결수의 전향, 미전향별로 구분할것)

법원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	·	·	·	·	·
인원수									

나. 수감자 교도소별

기 결 전 향			기 결 미 전 향			미 결 수 현 재		총 계	
전월인원	입소	출소	전월인원	입소	출소	전월인원	현재인원	총 수	

끝.

법 무 부 장 관

법 무 부

법 형 제8031호

1961. 12. 12.

수신 각 교도소장, 지소장

제목 범죄별 재감자 현황 조사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각 교도소에 수

용중인 죄익수중 간첩, 월북기도자 및 용공분자별 인원수를 별첨 양식에 의하여 매월말일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3일까지 당부에 필착토록 보고하십시오.

추신: 본 보고는 1961년 12월말 현재분부터 보고하되 특히 보고기일을 엄수 할것이며 만약 보고문서가 기일내에 당부에 도착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호를 사용하여 무전으로 보고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범죄별재감자현황

양식

1961년 월 말 현재

간 첩			월 북 기 도 자			용 공 분 자			총 계	
기결 전향	미결 전향	미결 계	기결 전향	미결 전향	미결 계	기결 전향	미결 전향	미결 계		

법 무 부

1961. 12. 27.

법 형 제9566호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죄익수 조사(월례)

1. 범비 제136호 (61. 8. 24.)에 의거 죄익수 조사월례보고 (매월 15일 현재)를 62. 1. 1. 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실시 한다.
2. 현 양식 1호중 죄과별을 별첨 양식과 같이 개정하고 기라는 현 양식에 의거 매월말 현재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죄익수 현황을 작성 매월 2일까지 보

고할 것.

3. 본 개정 양식에 의하여 61. 12월달 현재분을 62. 1. 3까지 보고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갑(6. 7. 14) 병(-1. 23. 24. 25. 26)

.....

법 무 부

법무교 제1636호

1962. 6. 13.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 조사 보고

1. 법기조 124(62. 7. 20.)로서 승인된 보고서식중 좌익수 조사보고서의 각종 통계에 있어서 62. 8월분부터 전향자와 미전향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할 것.

가. 전향자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그 인원수를 표시하고 미전향자는 홍색으로 그 인원수를 구분 표시할 것.

나. 입소자와 출소자 명단을 구분하고 전향자와 미전향자별로 작성하여 반드시 각각 2통씩을 보고할 것. 끝.

(본 문서는 기본운영과 관련없음)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1. 19. 23. 24. 25. 26)

법 무 부

교 정 2361, 25-415

1963. 7. 18.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 조사 보고서 양식 일부 변경

1. 법령 제8027호(61. 12. 2.)에 의거 당부에 제출하는 좌익수 조사(월례)보고서중 수감교도소별 좌익수통계 양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되 7월분 부터 변경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할 것.

2. 작성상 주의사항

가. 기결전향자중 출소의 "석방자" 란에는 만기 및 가석방 형집행정지등으로 출소환자를 기입한다.

나. 입소의 "전향"란에는 미전향자로서 전향입소환자와 전향자로서 형집행정지 취소 및 가석방 취소등으로 재입소환자를 기입한다.

다. 이송의 "입" "출"소란은 각 교도소간의 이송만을 기입한다.

라. 기결 미전향자중 출소의 "석방자"란은 "가"항의 "석방자"란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전향"란은 미전향자로서 전향출소환자만을 기입한다.

마. 입소의 "신입"란은 형이 확정된자와 미전향자로서 가석방취소 및 형집행정지 취소 등으로 재입소환자를 기입한다.

바. 이송의 "입" "출"소란은 "다"항에 준함.

사. 종전의 보고서중 미결수를 형확정수인 기결수와 종합작성하는 교도소가 있으나 미결수는 수감교도소별 좌익수 통계와 범죄별 재감자 현황 양식 이외에는 기입란이 없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 유의하여 작성할 것.

유첨 : 수감교도소별 좌익수통계 양식 1부. 끝.

(1) 요시찰인월말 동태(별지 제4호 서식)

(2) 요시찰인적별 월말현황(별지 제5호 서식)

.....

법 무 부

법교정 2060-20125

1967. 11. 30.

수신처 참조

제 목 정보사범 보도 및 교도에 관한 협조

1. 정보 및 보안업무조정 감독규정 (대통령령 제1665호) 및 국내 보안업무조정 에 관한규정 (정보부령 제211호)에 의거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하여 법교정 2060-30173(66. 12. 21.)로서 통보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의실시가 불철저(통보지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 당부 보안감사시 지적되었으니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 하시기 바람.

2. 정보사범(미결수 포함)으로서 통보 증거인명등으로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사항 또는 기타 정보사범에 관련될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중앙정보부장 또는 해당지구 대공분실장에게 전언통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시압.

3.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의 석방통보도 해당기관에 기일(형기 종료는 석방 전 2월, 기타자는 석방즉시)업수통보 할것이며 (당부에도 명단 1부씩을 제출할 것. (형집행정지자 포함)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1. 22. 31-41)

법 무 부

1968. 4. 6.

교 정 2060-6723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 업무 조정

1. 중대대 704(68. 4. 3.)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첨 사본과 같이 좌익수 업무조정 에 대하여 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하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가. 신규 입소자 카드 (법교정 2060-30437 (66. 12. 21.) 는 해 월분 을 일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

나. 좌익수형자 석방통보(법교정 2060-30437 (66. 12. 21.)는 석방 2개월 전에 통보하되 해 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

다. 이송, 사면, 감형, 가석방, 형집행정지, 귀류, 징벌, (법교정 2060-30437(66. 12. 21.))등도 해 월분을 일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제출 하되 해당지구 대공분실에는 사유발생 즉시 정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 "좌익수 업무조정"공문사본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교도관학교·소년원)

법 무 부

1966. 12. 21.

법교정 2060-30341

수신처 참조

제 목 죄익 수행자 카드 작성

1. 정보업무수행상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첨 죄익수행자에 대한 요시찰인 카드의 작성 송부를 의뢰하오니 각 교도소장은 아래에 의지 적극 협력할 것.
- 가. 66. 12. 31. 현재 수용중에 있는자 전원과 66. 12. 31.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 수행자에 대하여
- 나. 별첨 기재요령에 따라 카드를 작성하여 66. 12. 31. 현재 수용중에 있는자 전원은 67. 1. 31까지 66. 12. 31.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형확정 당시 수용교도소에서 작성 중앙정보부장에게 송부할 것.
- 다. 카드를 작성 송부한자에 대한 처우에 주요변동(석방, 귀류, 이송 등)이 있을때에는 매월말 사후 일괄 통보할 것.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 (1. 31-39)

기 재 요 령

1. 주의사항

- 가. 전부 한자로 정자로 기입할 것.
- 나. 전향, 미전향 별로 카드상부에 주서로 표시할 것.
- 다. 종별란, 변호란, 보증인관계란, 요시찰자란, 요시찰편입기준란, 삭제년월일란, 삭제일자란, 삭제이유란, 주의란, 수배관계란은 기입치 말 것.
- 라. 내용은 신분장등 공적기록에 의하고 불능시에는 본인에게 물을 것.

2. 세부 기재요령

- 가. 작성자란
○○○교도소,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할 것.
 - 나. 정당사회단체란
입소전 관계하였던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명시하고 지위, 및 활동년 한등을 기입할 것.
 - 다. 주소이동 사항
연고자나 가족의 주소 이동사항을 기입할 것.
 - 라. 과거활동 사항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과거 주요활동사항을 기입할 것.
 - 마. 배경인물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을 기입할 것.
 - 바. 5. 16이후 최근 동향란
5. 16에 주요 활동사항과 최근 포지하고 있는 사상적 동향을 기입할 것.
 - 사. 해외 및 재북 가족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재북 가족을 기입하고 주서로 해외, 재북을 구분 표시할 것.
 - 아. 시찰내용란
입소후 현재까지의 교도소 이동상황과 기타 처우상 특이사항(귀류, 징벌, 상포수여, 전향, 외부참관, 고발등)을 기입할 것.
- 예:
1959. 6. 1.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로 서울교도소 입소
1960. 2. 1. 징역 20년 확정
1960. 7. 1. 미전향자로 대전교도소에 이입

1962. 4. 1. 외부참관 (서울의 발전상)

1932. '0. 2. 전향서 제출

1955. 12. 1. 광주교도소로 이송

1966. 3. 1. 불온문서작성으로 금치 2월의 징벌에 처함.

자. 시찰자 및 기입란

시찰내용은 기입한자의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기입자란은 시찰자와 기입한자가 상이할 때만 기입할 것.

법 무 부

교 정 704-18786

1968. 12.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죄익수행자 카-드 작성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죄익수에 대한 교도 및 파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카드 작성 의뢰가 있어 동 카-드를 배부하니 69. 1. 10. 현재 수용중인 죄익수 (기미결 포함) 전원 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작성 69. 1. 20. 까지 필착토록 보고하고 앞으로 입소하는 죄익수에 대하여도 계속 동 카-드를 작성 송부할 것.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 (1. 22, 31-41)

前 科 關 係	言 渡 年 月 日	執 行 官 署	罪 名	刑 期
年 月 日	移 動 矯 導 所	年 月 日	特 異 動 向	

在監 () 囚

姓 名	性 別	男 女	本 籍
生 年 月 日	職 業	住 所	
檢 舉 機 關	日 時	場 所	
罪 名			
轉 向	未 既	刑 期	出 所 豫 定 日
轉 向 可 能 程 度			
出 身 地 域 別			
教 育 程 度			

법교정 : 832.5 -15920

1967.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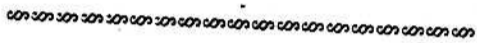
수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사형이 확정된 죄의 미결수 수용

현재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중인 사형이 확정된 죄의 미결수를 최우상 부득이 일반 미결수와 혼저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그러한 죄의수들이 죄의사상을 무지몽매한 일반 미결수들에게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들리므로 (예 6. 25 동란을 체험하지 못한 년소자인 절도범등을 혼저수용시키는 것은 죄의 사상에 감염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가능하면 독저수용시키게 하거나 자살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부득히 혼저 시켜야 할 때에는 죄의 사상에 감염될 수 없는자를 선발하여 혼저시키도록 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 (1. 31-40)



교 정 832.5 -10

1969. 5. 21.

수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미전향 죄의 수형자 수용

1. 예규교 139 (68. 4. 27) 에 의거 죄의수형자에 대하여는 사상전향여부를 불문하고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 각 분산 수용토록 지시하였으나 영등포, 인천, 목포, 군산, 의정부, 소록도지소등지는 취약지로

69
계리라
석방제도
유기

서적의 계리라 기습등 불의의 사태하에서 수용된 죄의수의 탈취 석방등 불상 사태가 예상된다는 중앙정보부 및 내무부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각소의 위치, 수용시설, 보안장비 기타 제반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미전향죄의수형자의 분산 수용방법을 일부 변경 지시하니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2. 69. 5. 27. 현재 각소에 분산수용된 (대전, 대구, 광주, 전주는 제외) 미전향죄의수형자로서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별첨 수용구분에 따라 69. 6. 10까지 해당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3. 69. 5. 28. 부터 새로 입소하는 미전향죄의수형자는 형확정당시 수용된 교도소에서 6개월동안 사상 전향공작에 극력노력하되 사상 전향을 하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전향 심사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첨부 : 미전향죄의수형자의 수용구분표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 (1.22. 34-41)

미전향 죄의 수형자 수용 구분표

현 수용 교도소	수송 교도소
서울, 청주, 공주, 안양, 의정부,	대전
춘천, 영등포, 수원, 인천,	대구
김천, 안동, 부산, 마산, 진주,	광주
순천, 목포, 소록도,	전주
군산,	

의안번호 제329호
의결 1968. 4.
년 월일 (계 회)
의결
결
사
항

미전향 죄의 수형자 분산 수용에 관한 건 ()

제출자 국무위원 권 오 병
(법무부장관)
제출년월일 1968. 4. 17.

1. 의결 주문

1961. 7. 29. 자 제51회 각의에서 의결된 "죄의미전향수형자 집결수용에 관한건"은 이를 해제하고 수형자를 형확정시 수용된 교도소에 분산수용키로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1961. 7. 29. 자 제51회 각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하여 오면 미전향죄의 수형자의 대전교도소 집결수용을 해제하고 각 교도소별로 분산 수용함으로써 죄의 집중공격목표로부터 이를 피하게 하고 구금확보의 만전을 기하러함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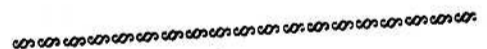
3. 주요 골자

대전교도소에 집결수용하는 미전향 죄의수형자를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서 각 분산 수용토록 한다.

4. 참고 사항

가. 관계부처의 협조

없음.
나. 예산관계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
다. 죄의수형자 소별수용 일람표
별첨
예고문 : 68년 4월 30일 일반문서로 재분류



교 정 832.5 -2

1970. 1. 16.

수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죄의 수형자 수용 구분

1. 교정 832.5-102 (69. 5. 21.)에 의거 미전향죄의수형자는 입소한 당해 교도소에서 6개월간 사상전향 공작을 위하여 수용되고 기간내에 전향을 하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전향심사 만료일부턴 10일 이내에 수용구분에 의거 해당교도소에 이송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최근 복피는 무력침공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적의 계리라 기습등 불의의 사태하에 있어서 죄의수형자의 탈취, 석방등 불상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죄의 수형자 집결수용방법을 일부 변경지시하니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2. 취약지에 위치한 춘천, 의정부, 영등포, 인천, 군산, 순천, 목포교도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70. 1. 20. 일현재 수용중인 죄의수형자는 전향, 미전향을 불문하고 교정 832.5-10 (69. 5. 21.)로 식달된 수용구분에 의거 70. 1. 31. 까지 해당교도소에 전원 이송할 것.

3. 70. 1. 21. 이후 새로 입소된 죄의수형자는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향의 수용구분에 의거 해당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끝.

법 무 부

법 비 제53호 1956. 4. 6.
수신 각 교도소장
제 목 좌익 수행자 동태 조사 보고에 관한 건

수제건에 관하여 좌익계 수행자 동태조사상 참고 하고자 하오니 4월부터 3개월에 1차씩 별지 서식에 의한 좌익수행자 동태조사표를 제출하십시오.

“추기”

1. 본 보고는 지난 2월 6일자 법형제429호 지시에 의하여 좌익수행자의 동태조사를 보고한 그후의 동태변동만을 조사 보고할 것.
2. 별포 보고서식의 재판별 난에는 군재, 민재를 전월동태난에는 3개월 중의 전향, 미전향 전향불능자별을 각각 기재할 것.
3. 금후부터 신입 좌익수행자 입소표를 제출할때에는 동포 상부난의에 전향, 미전향, 불응별의 직경 2리의 환인을 날인 표시할 것.
4. 본건에 대한 보고는 극비로 취급할 것.

법 무 부 장 관

법 형 제4279호 1959. 12. 15
수신 각 교도소장, 지소장

제 목 좌익수행자 사상동태 조사표 제출에 관한 건

법 무 부

교 정 832, 5-1435 1972. 1. 21.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

1. 좌익수의 분류수용 및 처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죄질별 분류기준을 시달하니 범죄사실을 면밀히 조사 분류하여 저실수용은 물론 교육교화 및 제반교정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전향선도 없우에 좋은 성과를 지양토록 할 것.

가. 좌익수의 분류

- (1) 좌익수는 전향좌익수와 미전향좌익수로 우선 분류하고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기준에 의거 다시 이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한다.
- (2) 분류기준

급별	류형	범 죄 개 요
A급	사상적 기초가 확고한 확신범	1. 간첩 또는 살해행위에 가담한자. 2. 선도적 임무에 당한 간부 또는 지도급 인물.
B급	사상적 바탕이 경미한 범죄	1.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한자. 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잠입하려 하였거나 하였던자.

본건 좌익수행자 사상동태 조사표는 종래에는 3개월에 1차씩 변동사항을 집계 보고하여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1개월에 1차씩 월말 현재를 익월 5일까지 당국에 필착하도록 보고하십시오. 끝.

법 무 부 장 관

법 형 제4366호 1961. 8. 10.
수신 각 교도소장, 지소장
제 목 좌익계 재소자 사고 통보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좌익수(용공분자 포함)에 대하여 기 미결수를 막론하고 병사, 탈옥, 도주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무전 또는 전화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당부에 보고 하십시오.

추신: 본건은 추후 서면 보고할 것.

“기”

- 기호 통보 내용
-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나 인적사항
- 다 사고종별
- 라 사고내용
- 마 조치상황
- 바 기타

법 무 부 장 관

C급 용공분자 (단순부역자)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죄를 범한자에게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자. 2. 남북어부로 반공법에 저촉된자. 3.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
-----------------	--

(3) 전향좌익수에 대하여는 평소 동정을 엄밀히 시찰하여 타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행형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판정에 따라 재 분류 타급에 전입 처우 할수 있다.
(4) 재 분류 급별 판정은 동정사찰에 대한 근무자의 1일 시찰보고서를 근거로 소장이 정한다.

나. 분류수용 및 처우

- (1) 전향의 분류급별을 참작하여 거실을 지정하고 공장, 교회당 등 좌석과 위치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각소는 세부 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 (2) 미전향 좌익수의 수용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C급에 대하여는 시설의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3) 전향좌익수라도 동일 거실에 A, B, C급을 혼거수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설의 부족이나 교정누진처우제실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4) 전향좌익수로서 특히 타수의 모범이 되고 관규를 준수하여 완전 전향한 자라고 인정될시는 본인의 장래에 희망을 주고 국가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려는 심리적 변화를 주어 심리전의 성과를 지양토록 가석방을 활용한다.

다. 좌익수의 각종 복역기록의 보전

신분장에 편철되는 제반 복역 기록문서는 출소후에도 요시찰 참고

문서가 됨으로 일체 폐기치 말고 준 영구 보존문서로 보관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 2-26, 29.

제 6 항 통 계

관 리 822-670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재소자 주식급여의 기준량
1. 재소자 주식의 등급과 급여량은 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정 제3조1항 별

밥보다 낮으므로 운반시 중첩으로 인해 밥이 압축되고 상자 바닥의
오물이 밥에 착되는 등 사례가 없지않아 있으므로 밥상자의 고는
밥보다 그 고가 높도록 개조보완하는 한편 밥보를 덮어 정결을 도모
하도록 습기 관리에 세밀한 주의를 강추할 것.

2. 부 식

가. 기준 영양가 급여

계반물가의 양등으로 부식급여에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사료되나 기본
영양가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이므로 메뉴 작성에 있어서는 가격 및
영양소 함유량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고 저렴한 고도 영양소가 높
은 식품을 선택할 것이며 식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가공품의 다양구입
과 동일 품종의 장기 급여를 지양할 것.

나. 카로리 산출의 정확

부식물의 급여에 있어 각 영양소의 기준량을 상회하도록 시향 메뉴
작성에 노력하고 카로리 산출은 식품군별로 산출하지 말고 65·3/4분
기 중앙 메뉴의 산출(재소자 및 원생중앙 기준 메뉴 성분 분석표)에
의거 각 식품별(예, 배추, 무우 등) 가식량을 표시하고 열량을 정확
히 산출하는 동시에 기준열량의 급여 여부를 확인 보고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1, 21, 22, 23, 24, 25, 26, 26, 29, 30, 31)

관 인 생 략

법 무 부

1955. 3. 31.

예규관 88-6555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재소자 식등급 추가 제정

1. 법교제 834.0-17288(65, 11, 3)로 신설 인가한 축산공에 대하여 그 식등급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제정하니 재소자 급식관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영농 및 축산특과 훈련생에 대한 식등급은 법무교 2464(62, 12, 8)로 지시한대로 시행할 것.
3. 추가 제정 사항

노작정도	작업공별	식등급	비 고
중 노동	축산공	2 등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병(21-25, 29-31)

관 인 생 략

법 무 부

69. 6. 17.

관 리 822-6700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재소자 주식급여의 기준량

1. 재소자 주식의 등급과 급여량은 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정 제3조1항 별

표 1에 따라 그 계량단위 1일 1인 1등식 918g에서 최하 5등식 603g로 하여야 할 것.

2. 따라서 종래 법관 800-1882(65. 4. 6) 재소자 급양관리 추가지침 중 1. 주식용 양곡 수분의 통일을 위한 것들을 이에 폐지하니 앞으로는 곡종별 중량과 혼합비 실제에 따라 별첨과 같이 중량(g)을 기준으로 식량을 분출 할 것.

곡종	백미		기타 잡곡		내두		중량
	혼합비	중량	혼합비	중량	혼합비	중량	
1등식	30% 30% 30%	275g 275g 275g	50% 65% 70%	459g 597g 643g	20% 5%	184g 46g	918g
2등식	30% 30% 30%	250g 250g 250g	50% 65% 70%	417g 542g 584g	20% 5%	167g 42g	834g
3등식	30% 30% 30%	226g 226g 226g	50% 65% 70%	376g 489g 527g	20% 5%	151g 38g	753g
4등식	30% 30% 30%	201g 201g 201g	50% 65% 70%	334g 435g 468g	20% 5%	134g 33g	669g
5등식	30% 30% 30%	181g 181g 181g	50% 65% 70%	301g 392g 422g	20% 5%	121g 30g	603g

법무부장관

수신처: 병 2-25(-22)

법무부

1970. 10. 16.

관 리 832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식품제조, 가공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실시

보사부령 제249호(69. 4. 15) "식품의 제조, 가공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실시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그 실시에 철저히 할 것.

1. 적용 범위

고체식품, 액체식품, 조미식품 등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다만 식품 위생법에서 따로 정한 식품과 화학적 합성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가 비 소(砒素)

식품중의 비소는 다음량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고체식품 1.5 p.p.M

(2) 액체식품 0.3

(3) 조미료 1.5

나 호름알데히드

모든 식품에서는 "호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주류(酒類) 중의 유해물질

생 략

3.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및 여러가지 식품에 대한 규격등은 동규정을 숙지하여 실시할 것이며 특히 대장균을 비롯하여 각종 세균의 규격이상의 함유등 재소자 보건위생에 유감된 일이 없도록 각 관계관 은 (1) 제조과정의 정결 (2) 각식품의 이"령"에 저축어부 (3) 조리

3. 수행자 교화책임제를 유경 무실에 이르지 않도록 그 시행에 철저히 하고 부하 직원을 독려 할 것.

4. 재소자 교화상 필요한 각종 교화행사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할 것.

5. 지구별 순회영화 기타 재소자에게 상영하는 영화는 재소자 교화상 적당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할 것.

6. 소내신문의 기사내용은 법무교 555(62. 4. 23)로서 지시한 소내신문 발간 지침에 의하여 수록 내용의 신중을 기할 것.

7. 재소자 교양지인 "새길"은 수행자 이외의 인사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배본에 철저히 기하여 재소자 교화에 최대한 활용할 것.

8. 재소자 열독서에 관하여는 재소자의 사상형성 및 개파촉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도서 검열에 엄정을 기할 것.

9. 피교육자의 학적부 교안부등 관계 서류는 깨끗하고 정확히 하고 수행자 교육의 불철저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할 것.

10. 교육 행형의 주축인 각교도소 교무과의 교화사무는 업무량에 비례한 인원의 부족과 타과의 협조가 부족하여 교화업무에 지장이 많다면 재소자 교화를 위주로하여 직원의 배정을 고려하고 타과의 협조를 적극 지시 강화할 것.

법무부

예규관 제5-384

1964. 1. 11.

수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좌익 수행자의 사상 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

1. 법교관 838-80 (63. 4. 3)로 지시한 좌익수행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 의한 제4단계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시키도록

중앙특수수행자 교화대책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았으므로 앞으로 전향심사를 할 때는 각지구의 중앙정보부에 의뢰하여 전향심사의 효과적인영을 기하도록 할 것.

2. 법교관 838-30 (64. 4. 3)을 무효로 함.

유 침 : 좌익수행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3부, 끝.

공공특수수행자

교도관회의

법무부장관 민 복 기

수신처: 병-(1. 23. 24. 25. 26. 27. 28)

좌익수행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1. 단계별 심사기간

1단계 반성촉구(10일내지 15일간)

2단계 전향공작(3개월 내지 4개월간)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파악(1개월간)

4단계 전향심사(10일내지 20일간)

5단계 전향문 발표(10일 내지 20일간)

2. 미전향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조치

1단계 (반성촉구)

가. 입소일부터 원칙적으로 독거수용

나. 기본심사(동기간내)

(1) 교무과에서 사상동향서 작성

범칙의 내용

범칙의 동기

가정환경 기타신상관계

범칙후의 감정

사상전향의 의사 유부
희망 사항

(2) 보안과에서 제반 동정 기록

ㄱ. 소장면접

ㄴ. 종합분석(보안과 및 교무과)

ㄷ. 공작 방안 수립

2단계 공작

ㄱ. 독거후 잡거방으로 전방(일반사범증, 온건사상 포지자)

ㄴ. 월 2회 이상 전방

ㄷ. 취업

ㄹ. 독거

ㄷ. 자유민주주의 및 인간윤리에 관한 도서열독 허용

ㄹ. 교화대책위원 기타 저명한 인사와의 면접세뇌

ㄱ. 교무 보안과장의 수시면접 세뇌(강제성 배제)

ㅇ. 소장면접 세뇌(월 2회 이상)

ㅈ. 이상 공작방안으로 효율성을 기함.

3단계 공작 (결과 및 동정 파악)

ㄱ. 광범위한 동정기록 작성

전방전 잡거하였던 재소자로 부터 취업장내의 기타수형자로부터
일상 동정 파악

ㄴ. 세뇌 결과

동향변전 사항

4단계 (전향희망자의 심사)

ㄱ. 심 사

(1) 교도관 회의

(2)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3)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ㄴ. 전향서의 제출

(1) 전향서 작성 요령

범죄의 동기

범죄의 내용

범죄후의 감정 및 비판 반성

전향의 동기

앞으로의 각오

ㄷ. 심사 근거

(1) 동향기록 (심적.....사상 포지관계)

(2) 동정 기록 (태도.....언어, 기술등)

ㄹ. 심사 기준

(1) 국가관

(2) 사상포기의 척도

(3) 회개 반성의 여부

(4) 위장의 여부(특히 투쟁방법에 의한 여부)

(5) 일반 직원 및 재소자들의 여론

5단계 (전향서 발표 방법)

총집교회시 또는 소내 방송 발표.

3. 분류 및 처우

가. 미전향자는 특수교도소에 이송

나. 전향자의 처우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소자와 동일하게 취급

다. 기 전향자는 재심치 않는다.

단 전향여부가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본단체를 거쳐 재심사 할 수
있다.

비고 1. 동향 및 동정기록부 전향서의 비치

가. 동향기록부 전향서: 교무과장 책임하에 별도보관

나. 동정기록부: 보안과장 책임하에 별도보관

다. 동향 동정 기록부는 출소 이송시에 신분장에 편철

2.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심사는 5단계 심사 방안에 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확정당시 잔형기 6개월 미만의 단기수형자는 등방안에 의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전향인 채 석방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므
로 금후에는 그와같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등 5단계 방안에 구애됨이
없이 단기 특별심사 할 것이며 다만 위장 전향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것.
3. 위 특별심사에도 교도관회의 및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중앙정
보부 관계관의 참여등 모든 절차를 취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법 무 부

관 리 838-12867

1969. 12. 1.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미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

1. 현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미전향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에
예의 노력중인 것으로 아는 바이나 금후에는 보다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전향공작이 요청되므로 별지와같은 좌익수형자 교화방안을
시달하니 본방안에 의거 미전향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며 동계획 및 시행결과를 별첨
의서식에 거 기일 엄수보고할 것.

2. 미전향자가 없는 교도소에서도 금후미전향자가 입소할 때를 대비 계
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것이며 시행결과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도 보
고서를 제출할 것.

3. 관 리 838-9699(69. 9. 4)는 이후 무효로 함.

첨 부: 1. 좌익수형자 교화방안 1부.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24, 25, 31-41)

좌익 수형자 교화 방안

1. 반공 간행을 발간 및 활용

대전교도소에서 발간하는 "바른길"과 각소에서 발간하는 소내신문에 가
급적 반공기사를 많이 게재하여 이를 그들에게 열독시키고 아울러 중앙정
보부(대공본실)반공연맹 경찰 일반 행정관청 종교계 학계등 광범위하게
각기간과 긴밀히 접촉 다수의 반공간행물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열독을 권
장하여 전향하도록 유도한다.

2. 반공강연

중앙정보부(대공본실)반공연맹 경찰 종교계 학계등에 긴밀히 연락협조
를 얻어 반공강연 연사를 초빙하여 공산주의의 모순성과 만행 참혹상등을
규탄 폭로케하여 그들이 듣고 느끼는 바 있어 전향하게 한다.

3. 영화 상영

시청각을 통한 전향공작의 일환으로 중앙정보부(대공본실)반공연맹 중
교계 학계 방송국 영화사 영화관등에 연락 협조를 얻어 반공영화 기록영
화 국가발전상 영화 문화영화 정서영화 등을 수시로 상영하여 그들이
깨달게 하여 전향토록 한다.

4. 사회 참관

구급 생활이 오래계속되어 사회발전상에는 눈이 어둡기 쉬운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여

69년부터
전향장려

느끼는 바 있어 전향하도록 하는 일환으로 산업시설이나 기타 유익한 시설을 참관 시킨다.

5. 가족 및 친족 연고자에 의한 전향권유

미전향자의 가족이나 친족연고자를 면접시켜 혈연지연을 통한 간곡한 전향권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심경을 변화시킨다.

6. 사회 저명인사에 의한 전향권유

중앙정보부(대공분실)반공연맹 경찰등 대공관계기관 인사나 대학교수 종교가등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미전향자와 면접 시켜서 간곡히 전향을 설득케 한다.

7. 가정 통신

미전향자의 가족이나 친족 및 연고자로 하여금 전향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게 하여 전향토록 한다.

8. 좌담회

중앙정보부(대공분실)반공연맹 경찰등 대공관계 기관 인사나 대학교수 종교가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미전향자와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전향한 우량 수행자를 합석시켜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하여 관계관 입회하에 간곡히 전향을 권유한다.

9. 교도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장 및 각과장의 간부의 전향권유

교도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장 및 각과장과 간부는 윤번으로 계획표에 의거 미전향자를 개별적으로 면접전향을 권유한다.

10. 반공도서 보급

대공관계기관이나 종교계 학계등과 긴밀히 연락접촉 하여 반공도서를

기증받거나 자체에서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열독시킨다

11. 방송에 의한 전향 공작

방송시설을 전향공작에 활용하되 아래내용을 포함계획표를 미리작성 발송한다.

가. 뉴스 중계(전향공작상 유해로운것을 제외한다)

나. 반공프로중계(예, 김삿갓 북한방랑기, 북한 7,300일등)

다. 반공강좌

라. 국가 발전상 소개 반공서적낭독 귀순자.자수자 소개

마. 반공음악 종교음악 정서음악 교양음악등 방송

바. 윤리에 관한 방송

사. 기타 반공에 유익한 내용

아. 녹음방송(전향공작에 유익한 각종자료를 자체에서 녹음하거나 대공관계 기관 방송국 종교계 학계등의 협조를 얻어 녹음하여 이를 방송한다.)

12. 카운 셀링

그들의 개별적인 문제 점 에로점을 청취하여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해소 또는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이 감복하여 전향토록 한다.

13. 전향자에 대한 처우개선

전향자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을 부과하여 희망을 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우량한자는 가석방 귀류등 은전의 혜택을 받게하여 다른 미전향자 전향공작에 도움이 되게 한다.

14. 교화기구 활용

카메라 환등기 악기등을 전향공작에 활용한다.

(예, 카메라를 이동 발전상 사진을 촬영 이를 보여주어서 심경변화를

유도 하는 등)

주, 본 방안외에도 각소 실정에 따라 좋은 방안을 연구 첨가 시행할 것.

미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계획서

Table with 3 columns: 주요사업, 세부계획, 비고

미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시행결과 보고서

Table with 5 columns: 주요사업, 세부계획, 시행결과, 시행못한 데에는 그 사유, 비고

위는 70. 1. 4부터 시행할 것이며 계획서는 분기 개시 5일전까지 결과 보고는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필착 토록 보고할 것.

법 무 부

법 무 부

판 리 838-168

수 신 수신처 참조

70. 1. 6.

제 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현재 각교도소에서 제출되는 각종 교무관계 보고서를 보면 그내용이 구할뿐 아니라 기일경과 및 기타 시정할 사항이 허다 하므로 별지와 같이 보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을 시달하니 이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참 부: 1. 각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1부.

2. 보고 서식 2부.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병-(1. 24. 31-41)

1. 좌익수형자 교화행사 보고서

가. 제목을 심리전 주보자료로 보고하는 교도소가 있는바 금후에는 좌익수형자 교화행사 보고서로 통일할 것.

나. 수개교도소를 제외한 타 교도소가 본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바 본 보고서를 집계하여 중앙정보부에 통보하고 있으니 금후 철저히 이행할 것.

다. 현재 순간보고인것을 주보로 보고하되 일주일간의 교화행사를 다음 주 월요일에 즉시 작성 보고할 것.

라. 교화행사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교회 1회 총집교회 1회등으로 극히 형식적인 보고를 하거나 전혀 보고치 않는 교도소도 있는바 금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마. 미전향자에 대한 교화행사뿐만 아니라 전향자에 대한 교화행사도 빠짐없이 보고하고 또 좌익수형자에 대한 교화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재소자와 좌익수형자 합동교화행사도 보고하되 대상인원은 좌익수형자만 표시할 것.

바. 보고서식중 일부 변경 되었으니, 별지양식으로 보고 할 것.

사. 별지 교화행사(예시)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보고 할 것.

2. 귀류 시행결과 보고서

가. 시행한후에 결과 보고하는 것임으로 시행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시행후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나.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할 것.

3. 각종 보고서 제출시 특히 주의할 사항

가. 작성후 검산 또는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적극 권유하여 직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주거를 가질 때까지 수용보호토록 노력할 것이며

1. 갱생보호회 지부장 또는 지소장은 법교관 829. 63-7343(63. 6. 26)에 의지 지시한 좌익수 출소자 사전통보 지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항상 수용보호자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단 피소 또는 이탈이 예측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재지 경찰서에 통보할 것. 라. 좌익수형자 석방통보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수신 편서명을 정확히 기록하여 문서수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동향기록 난에는
 - 가. 재소중 서신 왕래자 귀주지 및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 나. 면회자에 대한 거주지 및 인적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등을 기록하고
 다. 중요 동향 및 언동을 수록할 것.
3. 교도소간의 이송시에는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를 신분장과공히 송부 계속 활용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각교도소, 갱생보호회,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지부장, 각지소장

법 무 부

관 리 829-4774

수 신 수신처 참조

1969. 4. 25.

제 목 석방자 보호 업무의 철저

갱생보호회 각 지부 및 지소에서 갱생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보호의뢰 기관인 교도소장에게 석방자 보호업무의 철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달하였으니 각 지부장 및 지소장은 업무수행에 참고로 할 것이며 각 보호의뢰 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성취토록 적극 노력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 갱생보호회 각 지부 및 각 지소

법 무 부

1969. 4. 25.

관 리 829-4758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석방자 보호 업무의 철저

1. 보호의뢰 업무의 적절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자 보호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간 갱생보호 기관에 의뢰된 보호의뢰 사무를 분석 검토한 결과 요보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갱생보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수용 시설에서의 제반 생활기록 및 각종 조사추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수용 시설에서의 제반 생활기록 및 각종 조사추정(調査測定)한 결과를 기초로 하고 본인의 질서를 참고로 한 후에 보호의뢰의 여부 그리고 보호의 종류를 분류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서류의 분석 확인도 없이 단지 본인의 진술에만 의지하는 보호의뢰를 하고 있음, 무릇 갱생보호회는 갱생보호법에 의지 설립된 법인체이나 그 사업목적 기능이 시설의 교정기관으로서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이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교정 서시스템(System)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교도소와 갱생보호회에서의 교정과정(矯正課程)은 분리된 각 상이(相異)한 업무가 아니라 계속된 하나의 교정과정이라고 하겠으므로 교도소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있을 때에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는 물론 갱생보호 활동에 필요한 수용시설에서의 참고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송부하는등 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2. 갱생보호회의 사전조사 활동 협조

갱생보호회에서 행하는 보호활동은 수용 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의 조사

법 무 부

1969. 5. 27.

관 리 829.6-5926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사상범에 대한 보호 업무 지시

갱생보호회에서의 사상범이었던 자에 대한 보호활동은 미비한 시설과 부족한 직원 그리고 제한된 예산등 불비한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작금의 국내의 정세에 비추어 반공 체제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상범에 대한 보호활동이 진히 요청되므로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1. 보호의 결정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상범이었던 자에 대한 보호의뢰가 있을 때에는 전향 또는 미전향을 불문하고 무연고자에 대하여는 안정된 생활근거지가 마련될 때까지 수용보호의 조치를 취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거나 친족 또는 가족등 보호자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찰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를 함에는 반드시 출소기관 또는 관계 검찰기관에 의뢰하여 피보호자의 행장성적과 사상 동향의 측정기록을 심중히 종합 검토 하여야 한다.

2. 수용보호

가. 보호의 이관

수용보호대상자로서 시설의 미비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용이 곤란한 지부에서는 갱생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이관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나. 동정의 파악

사상범이었던자의 피수용자는 일반 피수용자와 그 거실을 달리하여 수

관	인수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인수	인수	인수																
관	인수	인수	인수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사상범 수용인원 비율

용토록 하고 그 동정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면밀히 파악하여 불온사상의 전파 또는 불온한 행동이 없도록 할 것.

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상범 피수용자의 보호이판 또는 무단퇴소 이탈이 예측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시한 관리 829.63-7348(63.6.26) 좌익수 출소자 사전통보 지시 및 교정 2061-4529(69.4.23) 좌익수형자 석방 및 보호에 의거 처리하고 수용생활중의 동태 여하에 따라 취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경찰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할 것.

3. 관찰보호

가.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상범이었던 자에 대한 관찰보호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결정 사유를 피보호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관계기관(중앙정보부)에 통보하고 갱생보호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법경찰 관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피보호자를 방문하여 교우환경 생활상태 및 사상 동향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할 것.

또한 관찰보호중 재범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정 2061-4529(69.4.23)에 의한 지시에 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갱생보호위원의 보호담당

관찰보호를 담당할 보호위원은 투철한 반공정신을 갖인자로 사상선도에 경험이 있거나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할 능력이 있는 위원을 선정하여 보호를 담당하도록 할 것.

다. 보호선도

관찰보호를 담당할 갱생보호 위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피보호자를 방문하고 교우환경 생활상태 및 사상동향을 관찰하여 필요한 보호선도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들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

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등의 적극적인 원호를 실시하여 사상선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 끝.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갱생보호회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지부. 인천 수원, 공주, 김천, 안동, 진주, 마산, 군산, 목포지소.

법 무 부 장 관

관 리 829.6-11059

1969. 10. 4.

수 신 수신처 참조

계 목 사상범에 대한 보호 업무 재 지시

관리 829.6-5926호(69.5.27)로 지시한 사상범에 대한 보호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재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수용보호 중이었던자중 사상 전향 또는 미전향을 불문하고 자립 또는 기타 사유로 해제하는자는

가. 관찰보호를 결정하여 보호위원으로 하여금 보호활동을 계속하게 하며

나. 주거가 타지부 관할 구역으로 이전 되는자는 그 관할 지부장에게 관찰보호를 결정하도록 통보할 것.

2. 기타 사항은 기히 지시한 관리 829.6-5926호에 의거 처리할 것.

법 무 부 장 관

수신처: 갱생보호회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9) 面接完了後の措置.

篤志訪問委員과 面接한 收容者에 對해서는 管理上, 指導上, 適切한 措置를 講究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所長에게 報告하여 措置토록 한다.

(10) 面接日誌.

敎務課에서는 個人別 指導簿를 備置하여 그 成果를 分析하여 資料로 活用한다.

3. 篤志訪問委員制度實施.

(1) 篤志訪問委員은 各分野別로하되 3名以上 10名以內로 委囑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委員을 委囑할 때에는 事前에 嚴密히 關係機關과 協助하여 身元을 確實히 把握한 後 所長이 委囑한다.

(3) 委員에 對하여는 身分證을 發給하여서는 아니된다.

(4) 現在委囑된 委員에 對하여는 本 指示에 依據 處理하되 身元照會 結果 缺格事由가 있는 限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解囑하지 말것이며 願에 依하여 解囑하였을 때라도 委員이 10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後任者를 委囑 하지말 것.

4. 篤志訪問委員 活用強化.

(1) 委囑된 篤志訪問委員으로 在所者 助言指導 活動 實績이 低調한 委員에 對하여는 本來의 使命을 完遂하도록 積極的으로 參與를 勸奨할 것이며,

(2) 篤志訪問委員을 새로委囑할 境遇에는 그 地域새마을 指導者를 委囑하여 새마을 成功事例等 實證的 經驗을 土臺로 한 在所者 助言指導 活動(個人相談, 講演等)에 實效를 期하도록 할 것.

(3) 篤志訪問委員이 交替되었을 時는 解囑 또는 委囑日字, 委員略歷, 職業等 報告를 徹底히 할 것이며 活動實績은 敎化行事 報告時(分期報告)에 그 內容을 備考欄에 明記할 것.

人口抑制 敎養教育 및 不妊施術勸奨

管理838-11644 (77. 3. 30)

1. 企豫316(77. 3. 23)으로 通報한 第1次(77. 3. 10)人口政策實務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한 事項과 關聯하여,
2. 世界的인 人口增加는 食糧難, 住宅難을 비롯한 環境汚染, 失業者 및 社會惡의 增加等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어 汎國民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家族計劃을 國民經濟를 向上시켜 보람있는 生活를 누리게하려는 文化人 運動이므로 各所는 在所者에 對한 家族計劃 事業의 一環으로 人口抑制 敎養教育을 다음과 같이 實施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도록 할 것.

다 음

(1) 敎育內容: 家族計劃의 必要性 및 避妊要領, 其他.

(2) 敎育時期: 月 1回以上(1時間)

(3) 敎育方法.

3. 自體講師, 敎務課長.

(1) 招聘講師: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各市, 道, 郡保健所 家族計劃擔當官

(2) 在所者中 不妊施術 希望者에게는 위 保健所와 協助하여 施術할 것.

4. 行政事項.

人口抑制 敎養教育 및 施術實績을 受刑者敎化行事 및 敎務報告書中 一般 敎養教育欄의 特記事項에 記入할 것.

左翼受刑者 思想轉向 審査方案示達

例規管 第5-384. (64. 1. 11)
管理838-12545. (69. 11. 25)

左翼受刑者 思想轉向 審査方案을 示達하니 本方案에 依據轉向工作 및 審査業務의 效率의 運營을 期할 것.

1. 轉向與否의 判定을 爲하여 轉向審査를 할 때에는 矯導官會議에 中央情報部關係官이 參與토록 各 地區의 中央情報部(支部, 分室)에 依頼할 것.
2. 思想轉向 審査는 5段階 審査方案에 依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刑 確定當時 殘刑期 6個月 未滿의 短期 受刑者는 本 方案에 依한 審査가 事實上 不可能하여 未轉向 그대로 釋放되는 事例가 있는 實情이므로 今後 이와 같은 短期受刑者에 對하여는 本 方案에 拘限됨이 없이 短期 特別 審査할 것이며 다만 僞裝轉向與否를 慎重히 審査할 것.
3. 위 特別審査에도 矯導官會議 및 關係職員의 出席과 意見陳述, 中央情報部 關係官의 參與等 모든 節次를 取하도록 할 것.

左翼受刑者의 思想轉向 審査方案

4. 段階別 審査期間.

1 段階	反省促求	10日 乃至 15日間
2 段階	轉向工作	3個月 乃至 4個月間
3 段階	工作結果 및 動靜把握	1個月間
4 段階	轉向審査	10日 乃至 20日間
5 段階	轉向文發表	10日 乃至 20日間

5. 未轉向者에 對한 段階別 審査措置.

1段階(反省促求)

(1) 入所日로부터 原則적으로 獨居收容

(2) 基本審査(同期間內)

① 教務課에서 思想動向書 作成

犯罪의 內容

犯罪의 動機

家庭環境 其他 身上關係

犯罪後의 感情

思想轉向의 意思有無

犯罪의 動機

犯罪의 內容

犯罪後의 感情 및 批判反省

轉向의 動機

앞으로의 覺悟

(3) 審査根據

動向記錄(心的~思想抱持關係)

動靜記錄(態度~言語規律等)

(4) 審査基準

國家觀

思想拋棄의 尺度

悔改反省의 與否

僞裝의 與否(特別 鬭爭方法에 依한 與否)

一般職員 및 在所者들의 輿論

5 段階 ; 轉向書 發表方法

總集教誨時 또는 所內放送發表

6. 分類 및 處遇

未轉向者는 特殊矯導所에 移送

轉向者의 處遇는 原則적으로 一般在所者와 同一하게 取扱

既轉向者는 再審치 않는다

但 轉向與否가 疑心되는 者에 限하여 本段階를 거쳐 再審査할 수 있다.

備考: 動向 및 動靜記錄簿 轉向書의 備置

(1) 轉向記錄簿 轉向書: 教務課長 責任下에 別途 保管

(2) 動靜記錄簿: 保安課長 責任下에 別途保管

(3) 動向動靜記錄簿는 出所移送時 ; 身分帳에 編綴

希望事項

- ② 保安課에서 諸般動靜記錄
- ③ 所長面接
- ④ 綜合分析(保安課 및 教務課)
- ⑤ 工作方案 樹立

2. 段階 ; 工作

① 獨居後 雜居房으로 轉房

(一般事犯中 穩健思想抱持者)

② 月2回以上 轉房

③ 就業

④ 獨居

⑤ 自由民主主義 및 人間倫理에 關한 圖書閱讀 許容

⑥ 教化對策委員 其他 著名한 人士와의 面接洗腦

⑦ 教務, 保安課長의 隨時 面接洗腦(強制性 排除)

⑧ 所長 面接洗腦(月2回以上)

⑨ 以上 工作方案으로 效率性을 期함

3. 段階 ; 工作結果 및 動靜把握

① 廣範圍한 動靜記錄 作成

轉房前 雜居하였던 在所者로부터 (就業場外의 其他 受刑者로부터) 日

常動靜 把握

② 洗腦結果 動向變轉事項

4. 段階 ; 轉向希望者의 審査

(1) 審査

矯導官 會議

關係職員의 出席과 意思陳述

(2) 中央情報部 關係官의 參與

轉向書의 提出

轉向書 作成要領

未轉向左翼受刑者에 對한 轉向工作徹底

管理838~12867. (69. 12. 1)

左翼受刑者 教化方案을 示達하니 本方案에 依據 果敢하고 效果的인 轉向工作을 施行할 것.

左翼受刑者 教化 方案

1. 滅共刊行物 發刊 및 活用

大田 矯導所에서 發刊하는 "教化資料"와 各所에서 發刊하는 所內新聞에 可及的 滅共記事를 많이 掲載하여 閱讀시키고 中央情報部(支部, 分室)反共聯盟等 一般行政官廳과 宗教界 學界等 各機關과 緊密히 協助하여 反共刊行物을 確保하고 閱讀을 勸獎하여 轉向하도록 誘導한다.

2. 滅共 講演

中央情報部(支部, 分室)反共聯盟 宗教界, 學界等과 緊密히 連結 協助를 얻어 滅共講演 演士를 招聘하여 共產主義 矛盾性과 蠻行, 慘酷相等을 糾彈 暴露케 함으로써 그들이 듣고 느끼는 바 있어 轉向하게 한다.

3. 映畫上映

視聽覺을 통한 轉向工作의 一環으로 中央情報部(支部, 分室), 反共聯盟, 宗教界, 學界, 放送局, 映畫社, 映畫館等에 連絡, 協助를 얻어 滅共映畫, 優秀劇映畫, 國家發展相映畫, 記錄文化映畫等을 隨時로 上映하여 轉向心을 誘發케 한다.

4. 社會參觀

拘禁生活이 오래 繼續되어 社會發展相에 어두운 그들에게 產業施設 都市發展相 名所等의 參觀으로 國家發展相을 認識케 하고 住民의 潤澤한 生活面을 피부로 느끼도록 보여 주어 轉向心을 誘發케 한다.

5. 家族 親族 및 緣故者에 依한 轉向勸誘

未轉向者의 家族이나 親族 緣故者를 面接시켜 血緣 地緣을 통한 懇曲한 轉向勸誘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心情을 變化시킨다

6. 社會著名人士에 依한 轉向勸誘

中央情報部(支部, 分室)反共聯盟) 警察等 對共關係 機關人士나 大學教授 宗

敎家等 社會著名人士를 招聘하여 未轉向者와 面接케 하고 懇曲히 轉向을 說得케 한다.

7. 家族通信

未轉向者의 家族이나 親族 및 緣故者로 하여금 轉向을 勸誘하는 懇曲한 書信을 보내게 하여 轉向토록 한다.

8. 座談會

中央情報部(支部, 分室) 反共聯盟, 警察等 反共關係 機關人士나 大學敎授 宗敎家나 社會著名人士를 招聘하여 未轉向者와 座談會를 開催하거나 轉向한 優良受刑者를 合席시켜 座談會를 開催하여 關係官 立會하여 懇曲히 轉向을 勸誘토록 한다.

9. 矯導所長, 敎務課長 및 各課長 幹部의 轉向勸誘

矯導所長, 敎務課長, 保安課長 및 各課長과 幹部는 輪番으로 計劃表에 依據 未轉向者를 個別的으로 面接, 轉向을 勸誘한다.

10. 滅共圖書 補給

對共關係 機關이나 宗敎界, 學界等과 緊密히 連結接觸하여 滅共圖書를 寄贈 받거나 自体에서도 豫算 範圍內에서 購入하여 이를 閱讀시킨다.

11. 放送에 依한 轉向工作

放送施設을 轉向工作에 活用하여 아래 內容을 包含; 計劃表를 미리 作成, 放送한다.

- (1) 뉴스 中繼(轉向工作上 有害로운 것은 除外한다)
- (2) 滅共프로 中繼(例: 김삿갓 北韓放浪記 滅共드라마 等)
- (3) 滅共講座
- (4) 國家發展相紹介, 滅共書籍朗讀, 歸順者·自首者紹介
- (5) 滅共音樂, 宗敎音樂, 情緒音樂, 敎養音樂等 放送
- (6) 倫理에 關한 放送
- (7) 其他 滅共에 有益한 內容
- (8) 錄音放送(轉向工作에 有益한 各種資料를 自体에서 錄音하거나 對共關係 機關, 放送局, 宗敎界, 學界等의 協調를 얻어 錄音하여 이를 放送한다.)

12. 카운셀링 및 個人敎誨

社會著名人士, 篤志訪門委員, 宗敎界人士 等을 招聘하거나 敎務課長 等 課長 幹部들은 그들과 個別的으로 面談 또는 카운셀링을 通하여 個個人的 問題 點 隘路點을 聽取하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이를 解決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感服하여 轉向토록 한다.

13. 轉向者에 對한 處遇改善

轉向者에 對하여는 即時 作業을 賦課하여 希望을 주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處遇를 改善하고 優良한 者는 假釋放 歸休等 恩典의 惠澤을 받게 하여 다른 未轉向者 轉向工作에 도움이 되게 한다.

14. 敎化器具 活用

카메라, 幻燈機, 樂器等을 轉向工作에 活用 한다. (例: 카메라를 利用 發展相 寫眞을 撮影 이를 視聽케 하여 心境變化를 誘導하는 等)

15. 其他 本 方案外에도 各所 實情에 따라 좋은 方案을 研究 添加하여 適宜 施行 할 것.

左翼 受刑者 轉向工作 專擔班 運營指針

例規管 第180-161 (73. 8. 2)

- 1. (目的) 左翼受刑者 轉向工作 專擔班(以下 要員이라 함)의 活動事項을 規定하여 보다 能率的인 工作業務를 遂行케 함.
- 2. (適用範圍) 轉向工作 專擔班의 運營 및 要員의 活動은 다른 規定이 없는 限이 指針에 依한다.
- 3. (構成 및 配置)
 - (1) 要員은 心理戰 敎育을 履修한 敎誨職으로 하며 左翼受刑者 集禁 矯導所에 配置한다.
 - (2) 要員은 左翼受刑者 轉向工作 業務를 專擔한다.
 - (3) 專擔班의 指揮統率과 事務를 分擔케 하기 爲하여 班長을 두고 班長 밑에 擔當官을 둔다.

교무관장 (4) 班長은 敎務課長이 되고 擔當官은 3級乙類 敎誨職 公務員을 所長이 任命한다.

(5) 班長은 所長의 命을 받아 擔當官 및 要員을 指揮 監督한다.

4. (會議) 專擔班은 다음에 關한 業務의 協議를 爲하여 班長主宰下에 每週1回 以上 會議를 開催하고 그 結果를 所長에게 報告하여 指示를 받는다.

- (1) 個別 工作成果分析 및 重要事項報告
- (2) 左翼受刑者 動向 把握 및 問題點 導出
- (3) 效率的인 工作方案 摸索과 計劃樹立

5. (擔當責任制) 左翼受刑者 個個人的 個性把握과 適正한 個別工作 實施 및 工作業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擔當責任制를 實施한다. 但 工作遂行上 必要하거나 要員別 分擔人員의 均衡的 擔當을 시키기 爲하여 級別擔當人員의 調節이 必要할 때에는 이 分擔區分에 拘礙없이 擔當을 適宜調節 할 수 있다.

- ✓ (1) 未轉向者 中 A級에 屬하는 者: 班長 또는 擔當官
- (2) 未轉向者 中 B級에 屬하는 者: 擔當官 또는 4甲職
- (3) 未轉向者 中 C級에 屬하는 者: 4甲 또는 4乙職

6. (擔當의 交替) 能率的인 工作業務의 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擔當을 交替 할 수 있다.

7. (擔當의 參席) 工作事業上 必要에 依한 社會參觀 또는 外部人士의 面接 其他 重要行事에는 擔當을 參席시킨다.

8. (移送時 擔當要員의 同行) 未轉向 左翼受刑者를 他矯導所로 移送 할 때에는 引繼所 擔當要員이 同行 出張하여 個人的인 人的事項, 工作進行狀況 其他 特異 事項等을 引受所 擔當 要員에게 詳細히 引繼하여야 한다.

9. (報告 및 記錄) 要員은 擔當한 工作을 終了하거나 工作遂行中 다음 事項이 發生한 때에는 遲滯없이 所長에게 報告하여 指示를 받아야 하며 諸般 工作進行狀況을 記錄備置하여야 한다.

- (1) 受刑者가 規律을 違反하였거나 事故가 있을 때
- (2) 受刑者의 身體에 異常이 發見되었을 때
- (3) 受刑者로 부터 情報를 提供받았을 때

(4) 受刑者가 不穩思想을 流布煽動하거나 秘密連絡事實이 發見되었을 때.

轉向左翼 受刑者 追隨善導 強化

管理838-24230. (73. 11. 8)
矯政8356-12. (77. 1. 15)

近間 某矯導所에서 轉向左翼受刑者가 國內情勢의 變動에 따른 狀況判斷의 誤謬로 不穩한 言動을 恣行하고 處遇上의 不滿을 理由로 轉向을 取消한 事例가 있어 在所者 敎化上 惡影響을 미치게 할 憂慮가 있으므로 다음 事項을 指示하니 轉向左翼受刑者에 對한 善導에 遺漏없도록 할 것.

- 1. 動靜查察의 強化

矯政 832. 5-1435(72. 1. 12)에 依한 各所의 轉向 左翼受刑者 動靜查察方法을 再檢討強化 함으로써 不穩動向을 事전에 探知하여 迅速한 對策을 講究 할 것.
- 2. 個人敎誨의 定期施行

轉向左翼受刑者에 對한 個人面接을 每月1回以上 施行하고 그 內容과 特別한 反應等을 追隨指導 및 思想動向카드에 詳細히 記錄維持 할 것.
- 3. 閱讀圖書의 貸與 및 回收의 適正

轉向 左翼受刑者 閱讀圖書의 貸出 및 回收에 對한 監督을 徹底히 施行하고, 特別한 圖書에 對하여는 讀書後 感想文을 提出케 하여 反應測定과 同時에 動向把握의 資料로 活用 할 것.
- 4. 滅共敎育實施

轉向 左翼受刑者에 對한 少規模의 特別敎育, 講座等을 計劃實施하여 事後 善導에 格別 留意 할 것.
- 5. 處遇改善 注力 및 實績弘報

管理838-12367(69. 12. 1)로 指示한 轉向 左翼受刑者의 處遇改善에 恒常留意하여 注力하고 假釋放, 歸休許可等 實績을 所內新聞, 放送等으로 積極弘報토록 할 것.

2. 收容保護

(1) 保護의 移管

收容保護對象者로서 施設의 未備等 不得已한 事由로 그收容이 困難한 支部에서는 更生保護法施行令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保護移管措置를 하여야한다.

(2) 動靜의 把握

思想犯이었던者의 被收容者는 一般被收容者와 그居室을 달리하여 收容토록하고 그動靜을 擔當職員으로 하여금 綿密히 把握하여 不穩思想의 傳播 또는 不穩한 行動이 없도록할것.

(3) 關係機關과의 協助

思想犯 被收容者의 保護移管 또는 無斷退所 離脫이 豫測되는 者에 對하여는 이미 지시한 管理 829,63-7348 (63.6.25) 左翼囚 出所者 事前通報指示矯正 2061~4529 (69.4.23) 左翼 受刑者 釋放 및 保護에 依據處理하고 收容生活中의 動靜如何에 따라 取하여야할 事項은 管轄 警察署 및 關係機關과 緊密한 協助를 하도록 할것.

3. 觀察保護

(1) 關係機關과의 協助

思想犯 이었던 者에 對한 觀察保護를 開始하였을 때에는 그 保護決定 事由를 被保護者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과 關係機關(中央情報部)에 通報하고 更生保護法 施行令 第1條 第4項의 規定에 依據하여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定期 또는 隨時로 被保護者를 訪問하여 交友環境 生活狀態 및 思想動向等을 觀察하여 그 結果를 通報받아 保護活動에 必要한 資料를 얻도록 할것.

또한 觀察保護中 再犯 또는 行方不明되었을 때에는 即時 矯正 2061~4529 (69.4.23)에 依한 指示에 準하여 關係機關에 通報하는등 必要한 措置를 取할것.

(2) 更生保護委員의 保護擔當

觀察保護를 擔當한 更生保護委員은 定期 또는 隨時로 被保護者를 訪問

하고 交友環境生活狀態 思想動向을 觀察하여 必要한 保護善導 措置를 取하고 특히 이들 被保護者에 對하여서는 生活扶助 教育扶助 住宅扶助 醫療扶助 生業扶助 등의 積極的인 援護를 實施하여 思想善導에 格別한 努力을 傾注할것.

4. 收容保護中이던者중 思想轉向 또는 未轉向을 不問하고 自立 또는 其他 事由로 解除하는 者는

(1) 觀察保護를 決定하여 保護委員으로 하여금 保護活動을 繼續하게 하며

(2) 住居가 他支部管轄區域으로 移轉되는 者는 그 管轄支部長에게 觀察保護를 決定토록 通報할것.

被保護者의 所有 金品管理의 徹底

矯管 829-1164 (70.8.26)

被保護者 所有金品管理上의 注意事項을 示達하니 더욱管理의 徹底를 期하여 諸般事故를 未然에 防止토록할것.

1. 被保護者 所有金品은 被保護者 個個人의 名義와 印章을 使用 預金토록 하여 任意로 引出 浪費를 못하도록 支部長責任下에 保管管理토록할것.
2. 保管管理者가 任意로 預金引出 못하도록 支部長은 徹底한 監督을 할것.
3. 被保護者 個個人의 預金總額을 圖表로 表示 事務室 및 收容舍等에 揭示토록하여 被保護者로 하여금 預金에 對한 競爭心을 注入시켜 보다 많은 預金을 하도록 督勵할것.
4. 被保護者의 所有金品의 預金을 支部에서 流用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만약 流用하는 事例가 發見될시는 保管管理者는 勿論 支部長을 嚴重問責 할것임.

物資節約推進強化指示

管理 110-30204. (75.11.29)

1. 物資節約 推進 體制確立

既히 物資節約 推進體制를 樹立하여 計劃을 履行 할것으로 思料되나 形式

財產收入 現況 (月分)

支部

區分 事業	保證 金額	年間收入 豫定額	收入決定額		實收入		未收入		實收入 內譯	未收額 內譯
			今月分	累計	今月分	累計	今月分	累計		
財 產 收 入										
	小計									
其 他 收 入										
	小計									
合 計										

左翼囚 出所者 事前通報指示

法矯管 829.63-160-7348 (63.6.26)

1. 內治政 261. 35(63.6.11)로 內部長官으로 부터 左翼囚 出所者에 對한 事前通報를 하여 달라는 依頼가 있으므로 貴管下 各支部 및 支所에서 收容保護中인 左翼囚를 出所시킬 때에는 다음事項에 依하여 當該管轄警察署와 治安局에 事前通報 措置토록 示達하기바람

- (1) 收容保護中 求職 또는 其他事由로 타곳에 永住를 目的으로 出他할 境遇 正確한 出他地를 事前調査하여 寫眞添付 出他1個月前에 "樣式 1號"에 依據 事前通報할것.
- (2) 收容保護中 任意出他(行方不明)한 者에 對하여는 出他 即時 通報할것.
- (3) 收容保護中 特異한 事項을 發見時는 發見 即時 通報할것.
- (4) 收容保護中 出他할 境遇 轉向與否와 釋放區分(轉向, 求職, 其他)事項을 반드시 記入하여 通報할것.

更生 保護會	本住 籍所	出 所	姓 名	生 年 月 日	罪 名	刑 期	釋 放 年 月 日	出 他 年 月 日	主要 家族 名	釋 放 區 分	轉 向 與 否	備 考	寫 眞 添 付

※ 備考欄에는 保護中 特異事項 및 性品如何를 記入할것.

適用을 받게 되므로(行刑法 第61條以下)行刑過程의 職務所管입은 明白하며,

- (2) 刑事訴訟法에 依하여 召喚된 未決收容者等の 公判期日出席, 檢事取調, 事件檢證을 爲한 現場臨席等の 境遇는 被召喚한 者의 連行을 爲한 戒護이고 護送가 아니다. 따라서 護送規則은 이 境遇에 適用되지 아니한 것이다.
- (3) 前示와 같이 矯導官吏가 未決收容者連行의 任務에 當함이 原則이나 職員 또는 豫算不足 其他 必要한 境遇에는 矯導所長은 管轄法院, 檢察廳 또는 警察署와 協助하여 警察官으로 하여금 前示 被召喚者의 連行任務에 當하도록 委囑할 수 있다.

假收容期間을 刑期에 算入與否

法刑 第1079號 (60. 5. 17)

1. 質疑要旨

受刑者가 刑執行停止決定 되었으나 引受者가 없이 矯導所에 假收容되었을 境遇 假收容期間을 刑執行濟期間에 算入與否

2. 回答

刑事訴訟法 第470條 3項에 依하여 執行濟期間에 算入 됨

未轉向 左翼 受刑者 依病措置에 關한 質疑

法刑 第4756號 (61. 8. 29)

1. 質疑要旨

- (1) 未轉向 左翼受刑者가 病으로 危篤한 境遇 一般受刑者와 同一하게 親族에게 危篤通報를 한후 家族面會를 許容하여도 無妨한지의 與否(未轉向 左翼受刑者에 對하여는 法刑 第1967號(51. 5. 27)에 依하여 接見禁止)
- (2) 未轉向左翼受刑者에 對한 刑執行停止 建議與否

2. 回答

하고 自殺 其他 變死한 境遇에는 그 事由를 關係 檢事에게 通報하여 檢屍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同第3項)아래와 같이 異論이 있는바 妥當與否.

(1) 甲說

- ① 受刑者가 病死한 境遇도 檢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② 假收容者가 病死한 境遇에는 變死로 看做해서 檢事에게 通報하여 檢屍를 받아야 한다.

(2) 乙說

- ① 受刑者가 病死한 境遇에는 檢事에게 通報를 아니해도 無妨하다.
- ② 假收容者가 病死한 境遇에는 刑執行 停止된 者에 限하여 檢事에게 通報하여야 하나 變死로 看做해서 檢屍를 받을 必要는 없다.

2. 回答

乙說이 妥當 하다.

在所者의 管轄外 召喚에 關한 質疑

68年度 所長會議時

1. 質疑要旨

現在 拘束中事件과 別個의 事件으로 被疑者 또는 被告人을 管轄外의 法院 또는 檢察廳에서 召喚이 있을 境遇에 矯導所에서 이에 應할 責任이 있는지의 與否

2. 回答

受刑者 護送規則上으로는 이에 應할 直接責任은 없으나 刑事訴訟進行上 協助함이 可할 것임.

- (1) 家族 또는 親族이 行刑法 施行令 第104條規定에 依하여 通報받고 面會를 要請 할 境遇에는 教化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 接見을 許可 할 것.
- (2) 左翼未轉向 受刑者에 對한 刑執行停止 節次는 宣告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現在地 管轄檢察廳 檢事와 協議하여 措置 할 것.

刑執行에 關한 質疑

法刑 第5391號 (61. 9. 14)

1. 質疑要旨

懲役1年에 罰金 642,000(換刑時勞役場留置 1,070日)의 宣告를 받고 懲役刑 執行中 刑執行停止로 出所하여 3年餘後에 殘刑執行指揮를 받은바, 刑法 第78條第6項에 依한 罰金刑의 時効가 完成되어 換刑執行을 할 수 없다고 思料되는 바 그 執行與否

2. 回答

刑法 第79條의 規定에 依하여 時効進行이 停止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하므로 換刑執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사료 됨.

受刑者 移送에 對한 質疑

矯政 8356-4818 (63. 8. 5)

1. 質疑要旨

軍人의 身分을 감추고 一般法院에서 刑의 言渡를 받고 그 刑을 執行中 軍人 身分이 밝혀져 該當軍으로 부터 身柄引渡를 要求하고 있는바, 現在執行中인 刑의 執行을 停止하고 軍에 身柄引渡를 하여야 하는지의 與否

2. 回答

一般法院에서 宣告한 判決의 効力이 有效하게 존속하는 한 同 受刑者의 身分이 軍人이라는 理由만으로 그 身柄을 軍矯導所에 引渡할 수 없다고 解釋

懲罰執行中 資格移動된 在所者의 懲罰繼續 執行 與否

68年度 所長會議時

1. 質疑要旨

懲罰執行中에 있는 被告人이 出所事由가 發生하여 出所케 되는 即日에 다른 被告事件으로 因하여 再收容되는 境遇 殘罰을 繼續執行 하는지의 與否.

2. 回答

在所中인 以上 資格移動이 되어도 執行可能한 懲罰은 繼續執行하여야 할 것임.

懲罰執行에 關한 質疑

例規矯 151-5943 (69. 5. 27)

1. 質疑要旨

受刑者가 禁置 2月의 懲罰을 받고 執行中 再次禁置 1月의 懲罰을 받았으며 一次執行中 第三의 禁置 2月 懲罰을 받은바 있는데 同 禁置都合 5月을 繼續執行함은 行刑法上의 禁置 2月 이내라고 한 趣旨에 反하므로 受刑者의 身體의 精神의 苦痛을 考慮하여 各懲罰사이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期間을 두고 執行하여야 한다고 思料되는 바 그 與否.

2. 回答

懲罰의 執行은 健康上 執行할 수 없는 境遇以外에는 原則적으로 遲滯없이 繼續執行하여야 한다고 본다.

未轉向 左翼出所者의 他犯罪로 再入所時 處遇에 對한 質疑

70年度 所長會議時

1. 質疑要旨

-刑期終了出所한 未轉向 左翼囚가 다른 罪名으로 再入所한 境遇 그 處遇에

對하여 未轉向 左翼囚로 處遇 할것인지의 與否.

2. 回答

未轉向 左翼囚로 處遇하고 轉向工作을 實施할것. 단 統計作成 其他 文書處理에 있어서는 現在의 犯罪를 基準으로 하되 各種 報告文書에는 그 原因을 把握할 수 있도록 備考欄等に 明記할것.

餘罪事件 受刑者의 處遇에 關한 質疑

70年度 所長會議時

1. 質疑要旨

受刑中 餘罪事件으로 受刑者와 被告人의 複合的身分을 가진者에 對하여 受刑者로 處遇할것인지, 被告人으로 處遇할것인지(接見 書信等)의 與否.

2. 回答

前示의 境遇, 被告事件은 不拘束事件으로 取扱되는 것이므로 刑事訴訟法 第91條에 依한 法院의 接見, 交通, 受信 等 禁止規定이 없는限 矯正所內의 모든 處遇는 受刑者로서 處遇할것.

轉向 左翼出所者中 다른犯罪로 再入所된 者의 處遇에 關한 質疑

70年度 所長會議時

1. 質疑要旨

轉向한 左翼囚로 出所하였던 者가 다른 罪名으로 再入所했을때 그 處遇에 對하여,

(1) 一般雜犯과 同一하게 取扱할 것인지?

(2) 轉向左翼囚에 對해서 取扱할 것인지?

(3) 萬若 轉向左翼囚로 取扱할 境遇 法矯政831, 5-10(69. 5. 21)에 의거 結取容 할것인지의 與否.

2. 回答

前示事由는 再入所 하였을 때는 一般犯에 準하여 處遇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保安上 左翼囚를 一定한 場所에 集禁할 境遇에는 左翼囚에 準하여 收容토록 할 것임.

無期徒刑 執行中인者에 對한 有期徒刑 執行에 關한 質疑

矯政 931 (72. 9. 20)

1. 質疑要旨

無期徒刑 執行中인 者에게 別個의 事件으로 有期徒刑이 確定되었을 境遇 同有 期徒刑의 執行與否.

甲說: 無期徒刑 執行中인 者에게는 罰金刑과 같은 財産刑을 除外하고는 有 期徒刑을 執行할 수 없다.

乙說: 刑事訴訟法 第462條에 依하여 2個 以上 刑의 執行은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科料와 沒收外에는 그 重한 刑을 먼저 執行한다. 但 檢事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 重한 刑의 執行을 停止하고 다 른 刑을 執行할 수 있다.

2. 回答

“乙說”이 妥當하다.

그 理由는 刑法 第50條1項 및 刑事訴訟法 第462條 但書에 依據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 無期徒刑의 執行을 停止하고 有期徒刑을 執行할 수 있기 때문임.

軍 受刑者 法定通算日 計算

矯政 831-22821 (72. 10. 19)

1. 質疑要旨

軍法會議判決에 依據 軍受刑者에 對한 軍檢察官의 刑執行指揮時 法定通

Vol. 1

- 1.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 서준식 기고문
- 2. 전향과 변절의 역사 - 전향제도 반대 기고문 모음
- 3. 논문/사상범 전향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연구
-1990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과 홍경령
- 4. 사상의 자유 / 조국. 살림터
- 5.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민가협 장기수 가족 협의회
-장기수 관련 자료집

Vol. 2

- 1. 한국 인권의 실상-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음. 역사비평사
- 2.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 - 천정배 변호사 1992년 UN인권이사회 참관기
- 3.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록
- 4.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집
- 5. 호소문
- 6.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7. 헌법소원 청구자 처우실태 및 관규위반 현황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자료집 내용